연구자료 D108 /1995. 9

토론회 결과보고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1994년 6월 14일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진흥 및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농지법 등 28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개혁, 농어촌발전대책을 재원면에서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농특세 신설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비추어 한층 보완 발전되어야 할 과제 또한 적지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당 연구원에서는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료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4편의 논문과 정부, 학계, 농어민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농정당국 및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995.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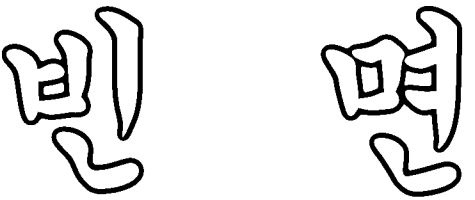

목 차

개회사 ····· 1

인사말 ····· 3

제1주제 발표

농어촌발전대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 문팔룡 ····· 11

제2주제 발표

농어촌 현장에서 본 농어촌발전대책 ····· 박완수 ····· 27

제3주제 발표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성과와 과제 ····· 설광언 ····· 71

제4주제 발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대책의
성과와 과제 ····· 정명채 ····· 95

토론 내용 ····· 115

행사 일정 및 토론 참석자 명단 ····· 161

개 회 사

존경하는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님, 농림수산 행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기관장님, 그리고 오늘 정책 토론회에 귀하신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및 방청 오신 여러분들께 연구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6월 14일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이 확정, 발표된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1993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농촌이 하루 빨리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4년 상반기에 대단히 바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특별세의 신설을 조기 입법화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에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농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민간자문기구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 발족했으며, 1994년 6월 14일에는 그 동안의 국민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든 농어촌발전대책이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농어촌발전대책은 종래의 정부 정책에 비해서 재원이 확실히 뒷받침 된 정책이며, 폭 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서 농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농림수산부뿐만 아니라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범 정부적인 노력을 통해서 농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데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종래의 정책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 20여개의 법령을 새로 손질하는 엄청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종래 하향식 획일적인 정책으로부터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추진

방식이 크게 바뀌었고, 정부의 기구 개편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구의 신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어촌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 비추어 농어촌발전대책도 끊임없는 보완과 발전을 이룩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초의 WTO 발족, 이 달중에 행해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업과 농촌구조의 변화 양상들은 우리의 노력을 한층 더 촉구하는 여건 변화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부가 추진해 온 농어촌발전대책을 점검해 보고, 문제점을 깊이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정책의 보완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임을 위하여 그렇게 길지 않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주제 발표자 여러분,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실 여러 전문가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정책 토론을 위해서 재정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신 농림수산부 최인기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연구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5. 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인 사 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부 최인기 장관입니다. 오늘 농어촌발전대책 1년이 되는 6월 14일을 앞두고 그 동안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와 같은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영일 원장님과 이렇게 많은 참석을 해 주신 농림어업 관계관님들, 그리고 특히 지난 해 농어촌발전대책 수립 당시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님 등 여러분들께 이러한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해 4월 6일자로 농림수산부 장관에 부임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93년도 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파고의 충격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를 한 차례 휩쓸었고 또 C/S 검증과정에서 전임 장관께서 자리를 물러나시면서 마무리 됐었던, 어떻게 보면 농정여건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1993년말 1994년초를 겪으면서 농어촌발전대책을 잉태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이 있었고, 여기에 통치권자의 의지로 농업 관련자 모두가 뜻을 모아 나가야 될 시점에 저는 장관직에 부임하였고, 그와 같은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뇌 속에서 농어촌발전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발전대책은 과거에도 정부가 몇 차례 수립해서 발표하고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대책은 과거의 대책에 비해 분명히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여건이 과격하게 변화되는 추세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다분히 역동적인 대책이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존의 접근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은 새로운 발상으로 과감한 전환

을 시도해서 농어촌발전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분야가 어딘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오랜동안 농정을 비판해 왔었던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수렴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과거의 대책이 시책의 변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재원의 뒷받침을 얻어가면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책을 강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42조원이라는 재원을 1998년까지 앞당기면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부문에서 역동성, 개혁성 등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여 동안 여러 부문에서 대책을 추진해 오면서 아직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도 많지만, 나름대로 농어촌발전대책 1년을 돌이켜 보면 많은 부문에서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정리를 해 나가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두드러졌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바로 우리 농어민들의 자조적인 역량을 불러 일으킨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경제의 원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그런 시대를 개막했다고 보며, 증액된 투자비가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통합실시요령이라고 하는 해답을 동시에 제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도지사 등 여러 군데의 지방 농정책임자를 거치면서, 중앙 농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불만적인 시각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 그 동안 농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농정개혁을 단행할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자조적인 역량을 불러일으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두어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민들도 많은 분야의 새로운 변화에 불안해 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어디서 경쟁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1년 동안에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1995년에 WTO체제가 출범이 되면 우리 농정은 어떤 충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촌현장에 가보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농어촌발전대책으로 제시했던 프로 정신이 투철한 전업농가나 전문가가 이제는 농촌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다양한 노력들이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말마다 농촌현장에서 농민들과 대화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에서 몇 년전에 알았던 점들과는 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풍부하고 의욕이 왕성한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도시 근로자보다 소득을 더 높여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발전대책이 주는 역동성, 개혁성, 이런 것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성과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해나가고 있으며, 농어민들에게 나름대로 공감을 얻어가면서 참여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정부의 예산규모가 15% 정도 늘었습니다만 우리 농림수산업 예산은 38.2%나 증액되었으며, 각종 투융자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농어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준비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대책들로 인하여 나름대로의 성과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정에 대해 오랜동안 뿌리깊게 있었던 불신의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관련 공직자들이 헌신봉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만큼 투자한 만큼 우리 농어민들한테 신뢰와 믿음을 얻지 못했었으나 농어촌발전대책을 시행한 이후로는 많이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처럼 탁상에서 획일적인 행정을 했던 방향에서 조금 더 현장 위주로 농정 여론을 수렴하면서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의 선정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물량을 배정했던 방식에서 각 시군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심의와 토의를 거쳐서 올라 온 물량을 시책과 재정을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하면서 농민들의 참여 욕구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농정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정도가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 불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투융자시책 이외에도 농어민연금제도 시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한도 증액과 얼마전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었던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특례입학제도 도입 등은 농어촌에서 굉장히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 역시 약속된 것은 이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뒷받침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농발대책을 1년 동안 시행하면서 몇 가지 보완이나 반성할 점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질서에 대해서 적응능력을 완전히 갖추는 일이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하도록 협동조합법을 고쳤습니다. 개정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려면 6월 24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에는 품목별조합 육성과 여러 가지 유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제도적인 틀이나 기본 방향만이 만들어져 있지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농어민들의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면서 참여를 촉구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농어촌발전대책의 대부분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는 아시는 것처럼 가격과 품질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정부는 분야별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농업은 투철한 프로 정신이 강한 전문인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업농 육성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농촌의 고령인구, 부녀인력에 대한 대책으로서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시키고, 농촌에 공업을 유치해서 유휴인력을 흡수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가시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농촌을 다녀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분야 역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농정 추진의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상향식으로 계획을 받고 중앙에서 물량을 확정해 내리는 단순한 업무처리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농림수산공직자에게 늘 얘기합니다만, 이제 농업도 자치단체간에 경쟁을 해야 합니다. 농가간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외국과 경쟁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농업도 국내 산업간에 경쟁도 합니다만 농가간의 경쟁,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도부터 예산 지원방식을 우수자치단체 우선지원 원칙을 지켜 나갈려고 합니다. 각종 지원을 통해 정말 성과가 높아진 자치단체에게는 다음 해에 더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해에 또 평가해서 잘하면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채소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를 평가해 성과가 크게 증진된 도·시·군에 대해서는 다음해 시설채소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주적인 능력과 노력을 많이하는 자치단체에는 그 해당 사업을 보다 더 지원하는 쪽으로 개선할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농가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통합실시요령에는 농림수산 소관 모든 사업의 실시요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축산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우 경쟁력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서 군에 신청하고 군에서는 많은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능력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먼저 지원해 나가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물론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1년, 2년, 3년, 5년이 가면 분명 능력있고 의욕있고 기술이 축적된 농가가 먼저 선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농어민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농가간의 경쟁, 그리고 그것이 크게 발전이 되면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채소농가나 화훼농가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시켜서 능력있는 농가에게 먼저 지원되도록 하는 원칙 역시 자치시대에서도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향식 사업 추진방식도 되지만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앞장서가도록 하면서 정부가 뒤에서 밀어가는 그런 체제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공직자들도 지방자치라고 하는 변화가 관념적으로만 와 있지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간부들에게 7월 이후에는 예산지원 사업들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처럼 농림수산부 장관이 임명직시장, 지사에게 사업물량을 주고 그런 쪽으로 밀어달라 해서 이행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효율을 얻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농정에 대한 불신의 폭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불신의 벽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 관련 공무원들의 자세와 사고는 아직도 과감하게 바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행정편의 위주에서 농민편의 위주로 과감하게 탈피한 사고와 행태를 가져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시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시책 추진도 지양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농림수산부 고위 공직자와 직원들에게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토의도 합니다. 그 결과 1년전 2년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개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민과의 불신의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더욱 배가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말에 나와 농어촌발전대책, 농어촌제도개혁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보아왔던 시각의 일단을 여러분께 말씀 올렸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일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와 같은 토론회가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이 발표된 1년을 맞이해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앞으로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많은 분야에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농림수산 시책과 예산사업, 법률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5. 6. 12

농림수산부 장관 최 인 기

빈 면

농어촌발전대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문 팔 룡(건국대학교 대우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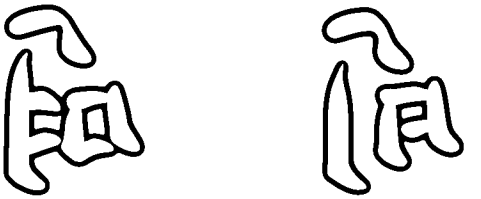

제1주제 발표

농어촌발전대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문 팔 룡
(건국대학교 대우교수)

1. 머리말

과거 우리 나라 농정의 최우선 목표는 식량증산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주곡인 쌀의 자급 달성에 농업투자의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 국제가격보다 훨씬 높은 쌀값의 유지와 쌀 생산자재에 대한 높은 보조와 더불어 다수확 품종 개발을 통한 쌀의 증산이 바로 농업정책의 핵심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밀려오기 시작한 농산물시장 개방화 압력과 그 후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더불어 이제까지의 총량적인 증산일변도의 보호농정은 한계에 왔으며, 우리의 농림어업은 이제 시장 개방과 국제경쟁을 전제로 하는 세계자유무역 질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경쟁력지향 농정」으로의 일대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4년 6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하여, ①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② 1·2·3차 산업이 공존하는 농촌의 복합산업화 및 ③ 전문적 농어업인력의 육성이라는 농정의 3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는 10개 핵심과제 164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과제의 내용을 보면, ① 농어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농어가 15만호 육성, ② 중소농의 특성을 살린 영농의 발전과 농어촌지역에 다양한 2·3차 산업의 유치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③ 농어업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농업회사법인제도의 도입, ④ 농지제도의 개혁, ⑤ 농수산물 유통의 계열화, ⑥ 기계화·자동화 영농체제의 구축, ⑦ 기술집약농업 및 환경농업의 육성, ⑧ 품질 위주의 농어업 경영촉진, ⑨ 환경보전형 축산업의 육성, ⑩「기르는 어업」육성과 산림자원의 조성 등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농지법 제정을 통한 농지제도의 개편을 위시하여 양곡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수·축·임협법 등 29개 제도 개선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기 중점과제의 내용을 볼 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발전대책 수립 이전부터 이미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새로운 착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점에서 과거의 대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투융자규모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방대하다는 점이다. 1998년까지 42조원의 방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농특세 15조원의 추가 투자재원의 확보를 바탕으로 예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995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개방화 압력 이후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을 소생시켜 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둘째, 민주적인 농정 집행방식의 도입이다. 과거에는 우리 나라 농촌 전체를「하나의 농장」으로 간주하고 농정당국이 마치 경영주인 것처럼 많은 경우 농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명하달식으로 농정을 집행해 왔으나, 앞으로는「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을 중심으로 농민 스스로가 사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셋째, 종산일변도의 단순한 일원적인 농업정책이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농업, 정주권으로서의 농어촌 및 농어민의 복지 향상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과거에는 가시적인 전체 물량 위주의 단편적 농정에 집착하고 구조 및 제도적 측면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농발대책에서는 농지제도 등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주요 분야의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고 경영효율 지향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발대책이 착수된지 1년밖에 안되므로 가시적이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방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전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인 만큼 본고에서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우선 10대 핵심과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투융자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2. 10대 핵심과제

2.1. 농어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 농어가 15만호 육성

- ○ 경영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업 농어가」를 선정하여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 자동화 등을 종합 지원
- ○ 농수산 전문 기술대학(농업 3, 수산 1, 임업 1)을 설치하고, 도별로 1~2개소의 자영 농수산 고교를 육성
  - 졸업생을 농어민 후계자로 우선 선정, 병역특례를 부여
- ○ 농어민 후계자는 경영 성과에 따라 후속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전업농」, 「선도 농어가」로 단계적인 성장을 유도
- ○ 일정 수준의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농어민에게 「농어업사」 자격을 부여,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지원

2.2.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영농의 발전과 농어촌지역에 다양한 2·3차 산업의 유치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 유기농업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소량다품종 생산으로 품질 차별화를 유도하여 소규모 경영의 이점을 확보

○ 전업 농어가가 되지 못하여 농어업을 그만두는 농어가도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 개발여건이 좋은 소도읍 주변에 「농어촌 산업지역」을 지정, 이 지역내의 농지 전용을 자유화
- 농공지구의 시·군별 개발 연면적을 30만평으로 확대
- 농어가 자녀 등 20만명에 대한 공공 직업훈련을 실시
- 산업체의 병역특례 인원을 농어촌 공장에 우선 배정

2.3. 농어업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농업회사법인제도 도입

○ 규모의 이점을 살린 법인 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기업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이러한 경영기법을 인근의 전업 농어가에 확산

예: 쌀의 경우 기존의 위탁영농회사를 흡수하여 규모화된 생산과 가공·유통 참여를 확대

○ 이 경우 농민의 주도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되 비농민의 출자를 제한적으로 허용

-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로 하고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농지소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

2.4. 농지제도의 개혁

○ 농지 매입시 「거리제도(20㎞)」와 「6개월 사전거주요건」 및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

- 농사짓기 어려운 한계농지는 비농민 소유를 허용하는 등 농지를

쉽게 사고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 규제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농지 투기의 방지를 위해
  -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 매매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
  -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엄격히 적용
  - 자영하지 않는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에 매도의무를 부과하고, 기한 내에 매도하지 않는 경우, 협의·매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계획적인 다목적 이용을 위해 「농지이용계획」제도를 도입

2.5. 농수산물 유통의 계열화

○ 농어민의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가공·판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를 육성

○ 벼 농사는 미곡 종합처리장과 연결하여 생산에서 도정·판매까지 같이 하는 쌀 전문의 생산·유통업체로 발전

○ 축산농가는 도축·가공·판매 등의 시설을 갖춘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계약 사육·납품·가공하여 자기 상표로 판매하거나 수출

○ 농어업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에 대한 식품 제조 가공업의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품목 허가제는 폐지

2.6. 기계화·자동화 영농체제의 구축

○ 1988년까지 진흥지역내의 논 136천ha의 경지정리를 완료, 2004년까지 20만ha를 대구획으로 재경지정리

○ 농지매매 지원과 교환·분합사업 등을 전업농 위주로 확대 실시하여 농장단위로 기반을 종합 정비

○ 벼 농사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대형 농기계의 일관작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직파기계, 무인헬기 등을 개발 실용화

- 농기계 반값 공급은 실수요 농가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계속 추진

○ 축산·원예단지 중심으로 시설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장비를 국산화하고 수출 대상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 모델을 보급

2.7. 기술집약농업 및 환경농업의 육성

○ 농어촌 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해 주기 위해
- 농어민과 전문가가 현장에서 공동 연구하는 실용기술 개발을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

○ 농어업분야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 향후 10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여 품종 개량, 한국형 시설 자동화, 환경농업 등 5개 분야의 기술 도약의 계기를 마련
- 유전공학, 전자제어, 기계설비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수산 기술혁신에 접합시킬 수 있도록 연관 분야별로 동시·협동연구하는 체제를 도입

2.8. 품질 위주의 농어업 경영 촉진

○ 품종 개량, 유기농법, 저장·관리법 등 기술지원을 강화, 농수산물의 고급 상품화를 추진

○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 「표준출하규격」 등 규격품 출하를 확대

○ 경쟁력이 있는 과실, 화훼, 시설 채소류, 돼지고기 등 고품질 규격품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키겠음.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 전담기관으로 개편하여 해외시장 정보모집과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2.9. 환경보전형 축산업의 육성

○ 축사의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고에 의한

축사 건축면적을 확대(60평→120평)

○ 부업 양돈·양계농가에 토착 미생물을 이용하여 분뇨를 사료화·비료화하는 분뇨 흡수 축사를 개발 보급

○ 축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년간 300억원 정도의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원료 수입 관세율을 인하

- 배합사료 제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허가제 → 등록제)하여 사료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
- 배합사료 부가세 해당액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에 최대한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추가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음.

2.10. 「기르는 어업」 육성과 산림자원의 조성

○ 「깨끗한 바다 가꾸기」운동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 양식어장을 신규개발하고 인공어초시설과 치어 생산·방류를 확대하며, 노후어선의 폐선 교체를 위한 자금도 지원

○ 중·소규모 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시설 등 국가 어항 83개 및 지방 어항(324개소)을 조기에 정비

○ 개발여건이 양호한 200개 연안 어업권역에 어선 계류시설, 포구정화시설, 어촌 관광시설 등 어촌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

○ 경제림 조성과 함께 휴양림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충하고 수종개량과 조림방법의 다양화로 경제임업을 유도

○ 산림작업의 기계화, 생력화를 위한 임도시설 확충과 산촌의 도로·통신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임업구조를 개선하고 산촌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음.

3. 발전 방향

3.1. 비농민(민간기업) 자본의 유치

정부 투융자지원계획이 비농민자본의 유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감이 있는데, 정부지원에서 민간기업을 소홀히 하고 생산자단체 위주로 운영한다면 민간기업의 투자 회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유통분야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등한시한다면 민간유통기업은 수입 농산물에 전념하게 되고 국산 농산물은 생산자단체가 주로 취급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국산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의 수익성 마저도 저하될 수 있다.

민간기업을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하는 경우 농민이나 농민단체에 돌아갈 부가가치나 이득을 비농민이 빼앗는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으나, 민간기업의 참여는 장기적으로 생산자단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곡 종합처리장, 청과물 종합저리장, 축산물 종합처리장, 수산물 종합처리장과 같은 유통·가공분야에 도시자본의 참여 범위를 넓히고, 유통기능을 담당할 집배센타 등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적 경영기법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전업농 육성, 영농 규모화 및 농촌 공업화

정부는 앞으로 15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함과 동시에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도농통합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경제 중심지에 산업입지 및 문화·복지시설을 개발하여 농촌지역을 농림수산업과 2·3차 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복합산업공간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도시

인구 집중과 상공업의 지역적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농촌 공업화는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농촌 공업화는 전업농 육성의 기본조건의 하나인 영농의 규모화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고용기회의 증대로 연중 농외취업으로 전환하는 농가 수가 많다면 자경농지를 매각하던가 또는 임대하던가 해야 할 것이므로 농지 집중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결과 일부 전업농에 규모확대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 공장부지, 주택용지 등 농지에 대한 농외수요 증가로 인한 지가 상승은 농지의 자산적 보유욕을 자극시켜 탈농하지 않고 계절 취업도 하고 농사도 할 수 있는 농가 수가 많아질 것이다. 더구나 농촌노동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전후의 장년층으로서 타산업으로의 전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업농의 규모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규모확대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소농층의 탈농을 유도할 구체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3. 농지 매매사업 및 농지 구입자금 지원을 통한 규모화

경영규모 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하여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 지원, 농지임대차선금 지원 및 농지의 교환·분합 등 농지유동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가족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탁영농회사 등 전문 영농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영농조직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매매사업의 실적을 보면 1989~94년 기간중 총 6만 농가에 총 1조 2천 560억원을 공급하였는데, 수혜 농가당 평균 지원액은 2,100만원 수준이었으며, 농지구입 지원면적은 총 2만 6천ha로서 수혜농가 호당 평균 0.44ha 수준으로 1993년을 기점으로 사업비, 지원면적 및 지원 농가호수 모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지구입자금 지원의 경우는 1988~93년 기간중 총 77,230 농가에 6,500억원을 공급했는데, 수혜 농가당 평균 지원액은 840만원 수준이었으며, 구입 지원면적은 호당 평균 0.40ha 수준으로 매년 농가당 지원액은 증가하였지만 지가 상

승으로 인하여 구입면적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수 농가에 대한 소규모·분산적 지원방식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개별농가보다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영농조직을 중심으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농업 기계화 및 시설원예 지원

방대한 예산을 배경으로 하는 정부 지원규모의 급격한 확대는 특정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농업기계화사업에 있어 과거부터의 구입가격의 높은 보조와 저리융자로 기종에 따라 이미 과잉투자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단위당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농발대책에서는 보조율을 50%로 높이고 40% 융자에다 자기부담은 10%밖에 안되는데, 이는 기계화 자본의 과잉투자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영농의 수익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전체 보유대수나 전체 기계화 작업면적으로 본 기계화율이 아니라 단위 농기계의 가동률인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위탁영농회사, 영농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에 한해서 반값 공급을 하고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낮추고 대신 융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원예의 경우 유리온실 면적의 급격한 증가로 채소류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1994년 1월부터 4월까지 가락동시장에 출하된 채소류는 42만 M/T 수준이었는데 1995년에는 52만M/T으로 1년전에 비해 10만M/T 이나 증가하였음) 가격이 폭락하고 이로 인하여 과중한 부채부담으로 파산을 우려하는 농민 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지원 대상품목의 수급사황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을 선별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3.5. 양곡시장기능의 활성화

UR 농산물협정에 따른 농업보조금 감축으로 정부양곡의 수매량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조치이며 따라서 민간유통기구의 활성화는 조속히 해결

해야 할 과제이다.

1993년 쌀의 유통 현황을 보면 총상품화량 384만M/T중 정부수매가 37.5%, 농협을 통한 시장출하가 31.1%(정부양곡 공매처분 포함), 양곡상을 통한 유통은 31.4%를 차지했다.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관비 금리, 감모손 등이 보상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계절진폭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쌀값의 인위적 억제와 계절진폭의 한정적 허용으로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정부수매가가 기준가격(bench mark price)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유시장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형성기능을 담당할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 산지 직거래방식이 다원화되고 거래물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가격형성의 구심체가 없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자나 소비자 이익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지 양곡유통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의 정착을 위해서는 양곡 도매시장기능의 정상화를 통한 공개적인 가격형성기능의 육성이 시급하다.

3.6.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의 도입

1995년부터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의 도입으로 정부의 투융자사업 선택에 있어 농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 한가지를 지적하면, 보조가 지급되는 투융자사업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는 관계없이 국고와 지방비의 의무분담 비율이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설채소의 생산·유통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의 경우 표준사업비의 4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도비와 시군비에서 40%를, 그리고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큰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재

정자립도가 낮고 반대로 2·3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예컨대 도시근교지역) 지방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비 분담능력이 클 것이다. 이는 보다 많은 사업을 실시해야 할 농업지역은 자체부담능력이 적다는 이유로 더 적은 규모의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된다. 해결책은 지방비 분담비율을 획일적으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율을,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는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3.7. 농지법의 시행

농어촌개발대책의 기본방향과 관련시켜 농지법(1994년 12월 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소유상한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은 3만 제곱미터를 유지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하되, 재배작목, 경영능력, 농지의 집단화,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5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소유를 인정함으로써 경영규모 확대를 전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또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및 취득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농어촌진흥공사에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재지주에 의한 농지매수를 억제하고 있으며, 이어 농어촌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농지의 농업외 용도의 전용을 쉽게하는 등 매우 전진적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은 제정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하여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친 만큼 내용자체의 타당성이나 현실성 여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한가지 지적한다면 정부는 필요에 따라 법

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 시행에 옮기지 않아 한낱 지상구호(paper slogan)로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농지임대차관리법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1986년에 법을 제정하고 1990년에 시행령을 공포했으나 그 많은 조문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하나를 제외하고는 실제 시행에 옮겨진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법 집행 여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만들어진 법은 반드시 실행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3.8. 투자재원의 적정 배분

앞으로 4년(1995~98년)이란 단기간에 과거의 몇 배가 되는 42조원이란 방대한 규모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농림수산부의 투융자계획을 보면 투자나 보조사업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것 같은데, 보조나 투자의 배분에 있어 개인의 자산형성에 속하는 사업은 가급적 융자형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공재 성격을 띤 사업은 투자 또는 보조형태로 지원하는 등 사업의 성격에 따른 지원방식의 선택에 관해서 엄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단시일안에 우리 나라 농촌의 모습을 변모시켜 보겠다는 의욕은 높이 평가해야 하나, 보조형태의 정부지원은 몇몇 개인의 재산증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형평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농민의 의타심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9. 유관기관간의 업무 조정기능

이번 농발대책은 농어촌의 복합산업화, 농민복지, 농민교육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농림수산부,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거의 모든 중앙부서와 직접·간접으로 업무상 연결되어 있다. 행정체계상 사업 집행과정에서 「수직적」 연결은 비교적 잘되어 있는데 반해 중앙, 지방을 막론하고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간의 「수평적」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이 커짐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상충에 대한 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10. 투융자사업 심사·평가기능의 강화

과거에는 투융자사업의 계획단계에서만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집행과정이나 사업 완료후에는 심사·평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투융자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사업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전문인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농림수산부, 내무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계획」, 1994. 6.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농어촌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 1994. 7.

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대책과제 추진상황」, 1995. 4.

농림수산부, 「한국의 농림수산정책」, 1995. 5.

농림수산부,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 방향」 (세부실천계획), 1994. 9.

정영일, "농림수산업의 여건변화와 한국농정의 과제," 1995.

농어촌 현장에서 본 농어촌발전대책

박 완 수(경남 합천군수)

빈 면

제2주제 발표

농어촌 현장에서 본 농어촌발전대책

박 완 수
(경남 합천군수)

1. 합천군의 여건과 농업 육성

1.1. 지역적 여건

○ 합천군은 경남의 서북부에 위치한 내륙산간지대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별 생활권이 분산되어 중추관리기능 부재

○ 총면적 983㎢중 74%가 임야로 구성되어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전통적 미맥 위주의 농업 중심지역으로서 농외소득원이 전무한 실정

○ 황강이 동서로 관류하며, 가야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합천호, 황매산 등 아직도 미개발상태인 천혜의 자연경관 산재

1.2. 지역 발전전략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군의 제반 현실여건과 오랜기간 정착된 전통적 농업 중심사회는 지역발전의 동인(動因) 부재로 이어져 왔음.

○ 군에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중심산업으로 「농

업진흥」과 「관광산업」으로 정하고

○ 농업은 과거 미맥위주 영농에서 고소득 특화작목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① 생산전략품목을 선정·중점지원하는 한편, ② 시설 현대화, ③ 선진농업기술을 접목시켜 나가면서, ④ 생산 위주 영농에서 유통·가공·판매 위주로 규격화·상품화하는 등 판로 개척도 중점 추진할 계획임.

○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농어촌발전대책은 합천군에서도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3. 지역농업 육성방안

1.3.1. 생산 전략품목 선정·중점지원

○ 특색있는 지역산품 육성을 위해 지구별로 912ha의 8개 주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 6개 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기조성된 화훼, 배, 오이와 함께 금년에는 딸기, 밤호박, 멜론 등 3개 품목의 전문단지를 추진중에 있음.

1.3.2. 시설 현대화 및 선진농업기술 향상

○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선진농업기술 향상이 관건이므로 전통적 수도작의 단위수확량 증대를 위해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를 108ha로 확대하고,

○ 특화작목 중심으로 현대식 P.C하우스 10동 5,160평, 유리온실 5동 4,600평의 첨단농업시설로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선진농업기술 접목을 위한 해외기술연수기회 확대와 선도농가를 엄선, 농업진흥기금 융자지원 확대를 함으로서 파급효과를 노려야 할 것임.

○ 축산분야에서는 1990~94년까지 155농가를 선정, 9,395백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시설을 현대화하고, 1995년에도 69농가에 8,091백만

원을 지원, 시설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제고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1.3.3. 유통·판매활동 강화

○ 농산물 간이집하장,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농가 편의 제공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합천군 농산물 고유브랜드 및 포장디자인(오이·참외·풋고추·딸기·호박·사과) 개발과 경남 추천상품제(Q·C)도 적극 참여(배·한과)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 부산·대구·창원 등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운영과 APT단지 및 기업체에 직거래사업을 전개, 지역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화훼, 멜론, 오이, 딸기, 밤호박 등 대일 농산물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2.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상황

○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생활환경 혁신을 위해 지난해 6월에 수립된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을 근간으로,

○ 합천군에서는 지역농민들로부터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한 275개 단위사업별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역내 품목별생산단체와 농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35인으로 구성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의와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중,

○ 농림수산부에서 최종확정된 9개 분야 71개 단위사업에 대해 60,103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예농수산인력 육성: 6개 사업/4,606백만원
  - 영농후계자 육성사업: 84명/1,691백만원(1인당 20백만원)
  - 쌀 전업농 육성사업: 92농가/2,215백만원
  - 기타 전업농 육성사업: 14농가/700백만원
○ 경영규모 확대: 2개 사업/3,356백만원
  - 농지 매매사업: 62ha/3,000백만원
  -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17ha/356백만원
○ 품목별 시설 현대화: 17개 사업/15,727백만원
  - 버섯현대화시설 지원: 3개소(3개면)/542백만원
  -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410ha(3개면)/1,642백만원
  - 경제성 과실단지 조성: 2개소(2ha)/25백만원
  - 경남수출농공단지조성사업: 1개소(5ha)/3,000백만원
  - 축산경쟁력제고사업: 62농가/6,110백만원
  - 축산단지조성사업: 1단지(3농가)/225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114기/2,322백만원
  -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 10농가/250백만원
  - 병해충 공동·항공방제비 지원: 4,002ha/91백만원
  -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지원: 17개소/175백만원
  - 화훼단지 조성: 1개소/1,200백만원
○ 농업생산기반 정비: 12개 사업/15,950백만원
  - 용수개발사업: 1,382ha/5,419백만원
  - 경지정리사업: 1,167ha/7,625백만원
  - 배수개선사업: 178ha/700백만원

- 기타 사업: 9건/2,206백만원

○ 농업기계화: 7개 사업/13,593백만원
-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1,785농가/7,586백만원
-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 13개소/1,146백만원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건립: 1동(100평)/55백만원
- 농촌다목적공간 건립: 1동(200평)/100백만원

○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 4개 사업/2,919백만원
- 간이집하장 설치: 9개소/483백만원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0개 품목/1,305백만원
-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3개 품목/1,131백만원

○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6개 사업/4,290백만원
- 농어촌특산단지 조성: 2개소/329백만원
- 관광농원개발사업: 1개소(2ha)/450백만원
- 농어촌민박마을조성사업: 1개소(6가구)/60백만원
-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135농가/405백만원
-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3개소/2,463백만원

○ 임업·산촌지원사업: 12개 사업/3,014백만원
- 임도시설: 26㎞/1,141백만원
- 육림사업: 2,979ha/1,068백만원
- 조림사업: 246ha/513백만원

○ 어업지원사업: 1개 사업/4백만원
- 양식용 기자재 공급: 4개소/4백만원

3.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상황 총평

3.1. 지금까지 농정시책 추진은

○ 정부에서 농정시책의 개별사업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하향식으로 사업을 집행토록 함으로서 농민들의 참여기회와 의사 반영이 제한되어 왔을 뿐 아니라,

○ 농정시책에 대한 총제적이고 전반적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받아 왔으나,

3.2.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3.2.1. 절차 면에서

○ 농림수산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농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원방식도 대폭 개선하여 농민이 직접 선택한 사업에만 지원토록 하여 참여기회를 확대시켰으며,

○ 농민의 의욕과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선정과 확정과정에서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과정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음.

3.2.2. 내용 면에서

○ 대책 추진 결과 농수산 정예인력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농촌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시켰으며, 첨단농업시설로 생산량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기할 수 있었고, 작목별 전문단지 조성으로 수출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농외소득 확충과 축산 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농어촌발전을 촉진시키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농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능력 및 자조·자율역량 향상에 큰 뒷받침이 되었다 하겠음.

3.3. 농어촌발전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 농정시책에 대한 농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지원방식 전환으로 농가로부터 일시에 많은 사업신청을 받고 있으나, 한정된 지원액으로 농민의 사업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업비 부족으로 다수의 신청농가가 사업에 참여치 못하고 있음.

4. 시책 분야별 추진 상황

○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생활환경 혁신을 위해 1994년 「정부의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발족되어 많은 의견과 토론을 거쳐 확정된 「농어촌발전대책」은 10대 핵심시책과 47개 분야가 있으나,

○ 합천군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주민의 참여와 추진성과가 높은 해당사업 7대 시책인 다음 사업에 대해서만 발표 하겠음.

- 정예 농어업인력 육성
  - 쌀 전업농 육성
  - 농어민후계자 육성
- 농지제도 개선
- 농민의 농산물 가공산업 참여 확대
- 생산기반의 조기 정비
  - 경지정리사업
  - 농어촌 용수개발의 지속적 추진
- 수출전략품목 육성
-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형 축산업 육성
- 임도시설 확충사업

4.1. 정예 농업인력 육성

농어촌발전대책 핵심시책중 정예농어업인력 육성은 가족단위의 전업농어가 15만호 육성시책과 선도농어가를 선발, 교육훈련장으로 활용,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 내실화, 「농어업사」제도 시책 등이 있으나 합천군에서는 경영능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쌀 전업농·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만 발표

4.1.1. 쌀 전업농 육성

4.1.1.1. 사업 개요

○ 육성 현황

-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전년도에 지역농민 247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92명을 선발하여 농가당 51.5백만원(농기계구입자금 23.5, 농지구입자금 28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음.

○ 지원자격

- 경영규모 2.0ha 이상(논·밭, 소유·임차 포함하여 그중 자기소유 논이 1ha 이상인 자)
- 경영주 55세 이하 농가 또는 56세 이상인 경우 영농기반을 승계할 동거인이 있는 자

4.1.1.2. 추진 성과

○ 영농기계화율 제고와 영농규모 확대여건 조성

- 과거 농가별 분산지원에서 농어촌발전대책 수립후 금년도에 선정된 전업농 92농가에 대해 집중지원함으로서 기계화영농 기반 조

성과 조기에 영농규모를 확대시키는 계기 마련

⇒ 1995년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쌀 전업농 육성제도 시행 여부」를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해 응답자중 69%인 63명이 "잘되었다"라고 응답함에 따라 앞으로 전업농 육성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져야 할 것임.

4.1.1.3. 문제점

○ 전업농 자격요건 강화로 젊은 층 배제

- 쌀 전업농 자격요건에 의하면 신청자의 소유농지가 임차농 포함 2ha 이상으로 제한됨으로서 지역내 발전성이 있는 유능한 젊은 층이 배제되고 있음.

⇒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업농 신청시 소유 영농규모 적정면적」을 묻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92명중 63%인 58명이 임차농을 포함하여 1ha가 적당하다라고 응답함에 따라 기존 자격요건 완화가 절실히 요구됨

○ 융자금 지원 부족으로 농가 부담 과중

-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대부분 농가에서는 대형 농기계 구입을 선호하고 있으나,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농가당 23.5백만원(보조 40%, 융자 50%)으로 한정되어 있어 초과금액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예: 트랙터 80HP 가격이 50백만원일 경우 초과금액 29백만원은 자부담).

⇒ 설문조사서에 의하면 「농기계 구입 희망기종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 80%가 트랙터/콤바인/이앙기/경운기 순으로 대형 농기계 구입을 선호함에 따라 대형 농기계 구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요구됨

○ 농지 구입조건이 까다롭다

- 농지 매도요건에 맞는 적당한 농지가 부족할뿐 아니라 농기계만 구입 목적으로 쌀 전업농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농지 구입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4.1.1.4. 개선방안

○ 전업농 자격요건 완화
- 기존 전업농 신청자격요건을 임차농지 포함 2ha 이상을 1ha로 완화하여 유능한 젊은 층이 전업농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선정에서 탈락된 자는 예비 전업농으로 관리하여 전문인력이 타직종으로 전환되는 사례 방지

○ 융자 지원 확대로 농가 부담 경감
- 농기계 구입에 부족한 사업비는 여유가 있는 농지 구입자금으로 대체 지원하여 농가 부담 경감 도모

○ 농지 구입조건 완화
- 쌀 전업농에게 농지 매도조건을 완화하여 농지규모를 확대 요망 (현행 65세 은퇴농을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겸업농가의 농지 매도를 현행 2ha 이상에서 1ha 이상 농가로 하향 조정).

○ 쌀 전업농 대상자중 농지 구입자를 우선하여 지원한 후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 쌀 전업농 대상자를 농기계와 영농규모 확대사업으로 구분 선정(농기계 구입시 최소 논 면적 3~5ha 이상 확보시 지원).

4.1.1.5. 전업농 의향조사 결과를 보면

○ "전업농제도가 잘 되었다"가 69%로 나타났고, 전업농 신청동기는 "기계화영농이 쉽기 때문에"가 62%였음.

○ 신청자격과 신청시 소유영농규모(1ha), 지원사업비 규모와 지원 비율 및 전업농가 육성방법은 현행대로가 좋다고 했음(55~79%).

○ 전업농가 대상자 선정방법은 농기계 구입과 농지 구입 분리를 원했고, 전업농의 연간소득은 30백만원 36%, 35백만원이 30%가 적당하고 이렇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영농규모가 5ha가 적당하다고

했음.

○ 자금 지원시기는 농기계 구입은 3월, 농지 구입자금은 1월을 원했음.

○ 기계 구입 희망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순으로 대형기종을 선호했음. 농기계 이용일수는 경운기를 제외하고는 연간 1개월 미만으로 활용도가 극히 낮았음.

4.1.1.6.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 농지 구입에 따른 제약조건이 많고 적당한 농지가 없어 구입이 어려운 점과 일부 농가는 농기계 구입사업비 확대지원요청이 있었으며,

○ 농지 매매자금은 지역별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가 많으므로 공시지가대로 지원되어야 한다(현실적으로 부적합)라고 하였고,

○ 전업농 자격기준에 있어 소유영농규모를 1ha로 하향 조정시에 임차농도 포함시켜 주기를 원함.

4.1.2.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전업농 의향 설문조사서〉

1. 전업농제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① 잘되었다(69.9%) ② 그저 그렇다(23.9%) ③ 모르겠다(6.5%)
2. 귀하께서 전업농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① 영농규모확대로 농가소득을 올려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한다(38%)
   ② 기계화된 영농으로 영농이 쉽기 때문이다(62%)
   ③ 타 산업보다 유망하기 때문에(0%)
3. 전업농 선정시 자격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경영주 연령 55세 이하, 영농경력 3년 이상, 영농소유규모 소유농지 1핵타 이상)

① 적당하다(76.1%) ② 적당하지 않다(18.4%) ③ 모르겠다(5.5%)

4. 전업농 신청시 소유 영농규모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현행 1헥타 이상)

① 0.5헥타(13%) ② 1.0헥타(63%) ③ 2.0헥타 이상(24%)

5. 전업농 대상자 선정방법 적정 여부는?

① 현행대로 적당하다(39%) ② 농기계구입과 농지 구입을 분리 선정(55.4%) ③ 기타(5.6%)

6. 전업농 총사업비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현행 51,500천원 자담 포함)

① 51,500천원(52.2%) ② 60,000천원(21.7%) ③ 70,000천원(14.1%) ④ 1억원(12%)

7. 전업농 사업지원 비율은(보조+융자+자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현행 비율 18.5%+77%+4.5%)

① 20+70+10(17.4%) ② 30+60+10(31.5%) ③ 40+50+10(51.1%)

8. 농촌에 정착하는 전업농으로서 연간소득은 얼마정도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30백만원(35.9%) ② 35백만원(32.6%) ③ 50백만원(31.5%) ④ 60백만원(0%)

9. 위 문항과 같이 소득을 올리려면 영농규모는 얼마의 확보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① 3.0헥타(32.6%) ② 5.0헥타(45.7%) ③ 6.0헥타(11%) ④ 7.0헥타(10.7%)

10. 전업농가 육성방법은?

① 현행대로가 좋다(70.6%) ② 개선되어야 한다(29.4%)

11. 자금의 지원시기는 몇 월이 적당한가?

① 농기계 구입자금: 3월 ② 농지매매·구입자금: 1월

12. 농기계는 어떤 기종을 원합니까? (우선순위별로 4종 기재)

① 트랙터 ② 콤바인 ③ 이앙기 ④ 경운기

13. 농촌의 장래전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희망이 있다(45.6%) ② 그저 그렇다(46.7%) ③ 모르겠다(7.7%)

14. 현행 통합실시요령 시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잘 되었다(38%) ② 그저 그렇다(27.1%) ③ 모르겠다(22.8%) ④개선되어야 한다(12.1%)

4.1.2.1. 사업 개요

○ 후계자 육성 현황

- 본군에서는 1995년도 후계자 84명을 선정한 것을 비롯하여 771명을 육성하였으나, 114명이 타직종 전환 및 기타 사유로 이탈하여 현재 657명을 육성·지원하고 있음.

○ 후계자 자금 지원계획

- 지원 대상분야: 농업·축산·수산분야
- 1인당 지원액: 15~30백만원(연리 5%,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후계자 신청자격

- 예비 후계자로 등록한 자로서 32세(1995년) 이하
- 40세 미만 병역필자로서 품목별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표 1 년도별 후계자 육성 현황 및 이탈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1990년이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비 고
육성 현황	771	441	15	73	78	80	84	(전입 2)
이탈 현황	114	37	6	8	15	47	1	

4.1.2.2. 추진 성과

○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정착의욕 고취

- 새 기술 습득으로 전체 후계자 657명중 60.5%인 398명이 연간 2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16%에 해당하는 106명은 도시근로소득보다 높은 연간 3천만원 이상 소득으로 안정된 정착생활 도모

○ 직판장 개설로 농산물 판매 촉진

- 후계자 주관 대도시 직판장 개설(부산·대구·창원시)하여 지역농특산물 판매 확대

○ 지역농산물 수출 확대

- 각 작목반별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으로 수출 유망품목 육성 해외시장 판로 개척(1995년 수출계획: 화훼 548, 멜론 31, 밤호박 80, 딸기 350, 오이 230백만원).

표 2 후계자 소득 분포

단위: 명

소득별 / 계	20백만원 이하	20~25백만원 이하	25~3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이상	비고
657	259	144	148	106	

4.1.2.3. 문제점

○ 후계자 선정연령 제한으로 이농 심화

- 후계자 신청지침상 1995년 기준 32세 이하로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으나,
- 젊은 층 대부분 영농경험 부족으로 사업 실패와 혼인문제로 도시 진출을 선호하는 반면,
- 농촌을 떠난 일부 젊은 층에서는 영농에 종사키 위해 고향을 찾고 있으나 현 지침상 연령 초과로 후계자 선정이 불가한 실정임.

○ 추가지원대책 미흡

- 후계자 선정시 지원되는 자금이외 추가자금 지원책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특정사업(작목) 후계자 신청 편중 심화
  - 후계자 선정시 대부분 후계자들은 손쉬운 사업에만 편중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역농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기피하

는 분야에 종사하는 후계자들의 사업의욕마저 위축시키는 등 지역농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특히, 축산분야의 비중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표 3 작목별 후계자 육성 현황

단위: 명

후계자 수	축 산	경 종	복합영농	시설채소	기 타	비 고
657	275 (48.1%)	119 (18.1%)	167 (25.4%)	60 (9.1%)	36 (5.6%)	

4.1.2.4. 개선방안

○ 후계자 선정 연령기준 상향 조정

- 후계자 신청대상연령(기존 19세에서 32세 미만)의 상향 조정(40세로 상향)과 후계자 선정시 심사기준을 객관성있게 강화하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 실패와 농촌을 떠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추가자금 지원대책 수립

- 후계자 선정 이후 사업의 추진 성과 및 경영실태를 종합분석하여 전망이 있는 사업에 대해 추가자금 지원대책 수립 요망

○ 사업별 후계자 신청자금 차등 지원

- 후계자 신청작목별 지역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중되는 작목(축산분야)이외 타작목 신청 후계자에 대해서는 후계자 지원자금을 상향 조정(현행 3천만원→5천만원)하거나 기존의 융자조건을 완화시키는 등 기존의 육성지침 개정이 요구됨.

4.2. 농지제도 개선

농지제도개선시책으로서 농지의 소유상한 확대, 통작거리제한 폐지, 비농민의 한계농지 취득 허용,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 및 보완시책이 있으나 농지규제 완화 이후 합천군에서 가장 성행되고 있는 농지전용제도에 대해서만 발표

4.2.1. 시책 개요

○ 농지규제 완화 요지

〈규제 완화 이전에는〉

- 농축산사업에 직접 관련된 사업이외 전용이 불가하고,
- 농지전용허가권한도 1,500㎡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 농지에 토석 채굴, 농지개량 등 농지 일시전용은 농한기에 국한되었으나

〈규제 완화 이후에는〉

- 숙박업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전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농지전용허가권한도 10,000㎡로 대폭 완화되고,
- 농지 일시전용도 농한기가 아닌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토록 조치

○ 관련 법규: 농지보전법 및 이용에 관한 법

4.2.2. 그간 농지전용 실태

○ 규제 완화조치 이전보다 농지 전용건수와 면적이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도 139건에 10ha에 비해 1994년도에는 1992년 대비 59%가 증가된 442건에 52ha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 1995년 5월말 현재 231건에 27ha가 기 전용조치 됨으로서 이런 추

세로 갈 경우 다가 올 2000년에는 본군 전체농지의 7.7%가 타용도로 전용될 전망임.

○ 전용목적도 농업용 및 산업생산시설 이외 타 용도인 소비시설 건립 목적으로 농지 전용이 확대되고 있음.

표 4 농지 현황

단위: ha

구분 / 계	진흥지역					진흥지역 밖					비고
	계	전	답	과수	기타	계	전	답	과수	기타	
18,413.9	6,819.1	553.8	5,987.6		277.7	11,594.8	5,131.2	5,602.4	33	828.2	

표 5 년도별 농지 전용 추이

단위: 건, ㎡

계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		95년 5월말 현재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268 (1,592)	1,331,830 (1,715,041)	139	105,237	456	425,427	442	527,444	231 (555)	273,722 (656,933)	( )는 예상 수치임

※ 1993년 규제 완화 이전 대비 23% 증가 추세.

표 6 농지 전용 유형별 분석

단위: 건, ㎡

유형별 / 년도별	계		농가주택		농업시설		공장용지		음식점		숙박업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268	1,331,830	127	76,200	509	498,130	37	222,000	570	498,000	25	37,500	
94~95	673	801,166	67	40,200	271	324,769	19	114,000	303	302,697	13	19,500	
92~93	595	530,664	60	36,000	238	173,361	18	108,000	267	195,303	12	18,000	

4.2.3.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

○ 무분별한 전용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미흡

- 규제 완화 이후 현행 농지전용허가는 허용행위가 아닌 제한행위(대기·환경·수질오염시설, 폐수배출시설 등) 열거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농지전용 신청시 규제방안이 없어 대부분 허가처리 함으로서,
- 일부 도시세력가들은 농지규제 완화를 악이용하여 무분별하게 현지 농민명의로 농지를 전용하여 지가상승기대심리 등 투기우려가 있음(※ 1994년 7월 이후부터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4.2.4.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여론

○ 농민후계자 및 농민

-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정책에 적극적 지지와 호응을 보이는 반면, 일부 도시민들의 무분별한 숙박시설, 음식점 건립 등으로 지역의 농민보다 외지인들이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으며,
- 이로 인해 미풍양속 저해, 부동산 투기, 현지 농민명의 주택건립 등 법 취지에 반한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농지규제 완화정책이 순수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 상공인

- 농지전용규제가 완화된 이후 준농림지역에서는 환경오염배출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공장 건립이 가능하여 기업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공장 설립에 애로를 느끼고 있음.

○ 일반시민

- 앞으로 다가 올 식량 부족사태와 자연 파괴, 미풍양속 저해 등을 우려하여 농업용 시설과 산업생산시설 건립에만 전용 가능토록 하고, 숙박 및 음식점 등 소비시설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4.2.5. 개선방안

○ 소비시설에 대한 전용행위 규제 강화

- 식량자원 확보와 농지 보전을 위해서는 농업용시설과 산업생산시설에 국한하여 전용 가능토록 하고, 음식점 등 소비시설을 위한 전용에 대해서는 숙박업과 같이 최대한 규제하는 방안과 진흥지역 내에서는 기존 허용행위를 대폭 축소하여 농지 전용을 억제해 나갈 수 있는 관계 법령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4.3. 농어민의 농수산물 가공산업 참여 확대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의 육성시책에는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확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임산물 종합처리장 설치, 농어민의 농수산물 가공산업 참여 확대 등 6가지 시책이 있으나, 합천군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전통식품과 산지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 발표

4.3.1.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대외경쟁력 강화
-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식생활 계승·발전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 가공산업 육성 현황: 6개 업체(전통 5, 산지 1)

- 기 육성품목: 3개 품목(합천한과, 쑥국수, 메주)
- 1995년 육성계획: 3개 품목(지장·막장, 물엿, 밤 가공)

○ 지원규모

- 전통식품개발사업(마을 공동): 180백만원
- 산지 가공산업(비농가, 일반업체): 1,000백만원

○ 지원기준: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 산지 가공산업 육성: 전액 융자

4.3.2. 추진 성과

○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

-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예: 1989년도에 육성한 합천한과는 1993년 국제식품상 수상획득으로 연간 613백만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농가(19호)에서는 노임과 원료 생산· 공급으로 연간 144백만원(호당 6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4.3.3. 문제점

○ 생산품 판매 애로

-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홍보비 부족으로 대내 홍보활동 미흡과 대도시 전문판매점 미 확보로 판매에 어려움이 많으며,
- 인기 생산품목에 대해서 대기업 참여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시장 정보 미흡으로 수출물량 미확보

○ 산지 일반가공업체 운영 부실 우려

- 가공산업에 지원되는 시설비는 전액 융자사업비로서 생산·판매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압박으로 운영 부실 우려

○ 우수 전통민속주 개발 애로

- 본군에서는 옛날부터 우수한 민속주가 전례되고 있지만, 제조방법과 유래에 관한 문헌이 보존되지 않아 명인 지정·추천이 불가능하며, 명인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민속주 개발을 주세법에 의거 주류 면허를 득한 후 생산이 가능하나 면허 취득절차가 어려워 주류

면허 신청을 기피하고 있음.

4.3.4. 개선방안

○ 정부지원 상설매장 설치 및 제도 개선
- 정부지원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상설판매장 설치로 판매량 확대와 신규업체 지정시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승인을 지양하고 대기업 참여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산지 가공업체 지원조건 완화
- 산지 일반가공업체도 지역농산물을 농가로부터 수매·수집·가공하므로서 마을 공동 또는 생산자단체와 동등하게 전액 융자지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조건 완화

○ 주류 면허요건 완화
- 옛날부터 농가에서 전래되는 민속주에 대해 개발이 가능한 농가에 대해서 기존 주류 면허요건을 완화하여 전통식품 개발사업과 동등하게 육성·개발이 요구됨.

4.4. 생산기반의 조기 정비

생산기반의 조기정비시책 중에는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조기완료,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추진,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어촌 용수 개발의 지속적 추진 등 10개 분야가 있으나, 합천군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사업과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발표

4.4.1.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조기 완료

4.4.1.1.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
- 주민 호응도와 사업 시행여건이 양호한 지역 우선 추진

○ 1995년 본군 사업시행계획

- 일반 경지정리사업: 1995년 가을 착수부터 1998년까지 1,327ha (25,585백만원)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1995년 봄 마무리부터 1998년까지 916ha (19,694백만원)

○ 사업비 지원: 국고 80%, 지방비는 국고 지원액 초과 금액

※ 지원 단비: ha당 19백만원

표 7 경지정리 현황

단위: ha, %

년 도	구 분	답면적	가 능 면 적							
			계		기정리		미정리		불안전답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1995년 봄 마무리	합천군	11,590	7,385	64	5,275	71.4	2,110	28.6	4,205	36

* 전국 85%, 경남도 79%.

4.4.1.2. 문제점

○ 경지정리사업 단비 부족

- 본군은 산간오지로서 기 경지완료지구는 도로변 인근의 경사도가 완만하여 단비가 적게 투자되었으나 앞으로 추진될 지구는 산골짜기에 있는 수리불안전답으로 고저 차가 심하고 단비가 많이 드는 지역으로 일률적으로 책정된 단비(1994년 경우: 19,270천원)로서 사업 시행 애로

○ 환지제도 불합리

-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126조 제5항에 의하면 경지정리 환지사업시 300평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받을 수 없고 금전으로 청산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토에 대한 애착심이 많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유발되고 있음.

○ 사업시행 예정지 영농 손실액 보상제도 전무

-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다소 영농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대다수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농한기의 특작(비닐하우스) 수입이 전체 영농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추진 애로

○ 사업지구내 농로 미포장

- 경지정리사업지구내 기계화 경작로는 대부분이 마을간 연결도로로서 늘어나는 교통량, 농산물 수송, 기계 이동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지정리사업 후 포장이 되려면 1~2년 경과후 가능함으로써 우수기에 농산물 유통, 주민 통행 등에 상당한 지장이 많음.

4.4.1.3. 개선방안

○ 경지정리사업 단비 현실화

- 경지정리사업의 ha당 단비를 현지와 부합되게(평야부와 산지부 구분) 책정하여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와 몽리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 요망(현행 19,270천원/ha→24,000천원/ha 24% 증).

○ 환지제도 개선

-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을 기존 300평에서 200평으로 법을 개정하여 해당 농민들의 정주의욕 고취

○ 사업시행 예정지 영농 손실액 보상제도 수립

-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지는 영농 손실액이 보상될 수 있도록 충

분한 예산 지원

○ 사업지구내 포장계획 수립

- 늘어나는 교통량과 농산물 수송, 농기계 이동 등이 용이하도록 경지정리사업계획시 포장비를 확보하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망

4.4.2. 농어촌 용수 개발의 지속적 추진

4.4.2.1. 사업 개요

○ 추진 방향

- 한해 상습지로서 사업효과가 크고 농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구
- 조기 사업효과 거양을 위하여 준공 위주 집중 투자

○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한 본군 장기계획: 5,948백만원

- 일반용수 개발: 74ha/1,575백만원
- 보강개발: 719ha/3,113백만원
- 일반관정 개발: 42공/1,260백만원

○ 1995년 농업용수개발계획: 55개소/2,269백만원

- 소류지 준설 및 개·보수: 16개소/201ha/468백만원
- 양수장 설치 및 개·보수: 6개소/178ha/898백만원
- 용수로 설치사업: 10개소/167백만원
- 암반관정 개발: 23개소/736백만원

○ 지원계획: 국비 70%, 지방비 30%(암반관정개발사업 전액 국고)

표 8 합천군 수리안전율

단위: ha, 개소

총 답면적	수 리 안 전 답			불안전답	비 고
	개 소	수리면적	비 율(%)		
11,590	866	7,846	67.6	3,744	

표 9 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시설별 / 계	소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소형관정	인력관정	방사성(집수정)	기타	비고
866	346	103	132	42	134	81	11	6	11	

4.4.2.2. 문제점

○ 기초수맥조사 미흡

-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별로 정확한 수맥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난해의 경우 가뭄대책시 46개소 암반관정 중 12개소의 폐공 발생으로 해당 몽리민들의 불만이 많았음.

○ 사업비 분산지원으로 사업효과 저하

- 정부에서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예산 지원이 집중투자되지 않고 년도별로 소규모 지원됨으로서 소규모 소류지를 개발하는데 비해 7~8년이 소요됨으로서 해당 몽리민들의 불만이 높을 뿐 아니라 연차지원으로 인한 매년 사업 단비 인상분은 사업비에 책정되지 않고 지원됨으로서 군비 부담은 물론 사업효과마저 떨어지고 있음 (예: 본군 노곡소류지의 경우 1,403백만원 소요예산으로 1992년도에 착공 1995년 현재 708백만원을 투입 50% 진척 상태이며, 3~4년 후 준공이 가능함).

○ 예산 지원 부족으로 군비 부담 가중

- 암반관정개발사업에 있어서도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30백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각종 자재 및 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군비 추가지원 없이는 완벽한 마무리 불가(1공 개발시 37백만원 소요).

4.4.2.3. 개선방안

○ 기초수맥조사계획 수립

- 완벽한 한해 극복을 위해서 시행되는 각종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시 인력과 시간·예산 낭비요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지역별로 정확한 기초수맥조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사업비 집중투자로 효율성 제고

- 소규모 소류지 개발시에는 정부에서 정확한 투자계획에 의거 예산을 집중투자함으로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반면 농촌농민들의 불만 해소와 과거 선거 공약사업이란 빈축을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예산 지원 현실화

- 각종 사업 지원시 현실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사업비 부담 경감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4.5. 수출전략품목 육성

수출전략품목으로서는 시설채소·과실류·화훼·돼지고기 등이 있으나 합천군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이 높은 화훼·시설채소에 대해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음.

4.5.1. 사업 개요

○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전문단지 조성

- 2개 품목: 화훼, 채소류(오이, 밤호박, 멜론, 딸기)
- 단지 조성: 6개소(기조성 3개소, 1995년 계획 3개소)

○ 전략품목 육성 수출 현황

- 1994년 수출실적: 화훼외 4개 품목 518백만원
- 1995년 수출실적: 화훼외 4개 품목 1,238백만원

○ 지원기준: 단지당 총사업비중 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

표 10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 현황

단위: 톤, 백만원

구분 / 품목	참 여 농 가	면 적 (ha)	생산량 (M/T)	소득액	1994년 수출실적		1995년 수출계획		비 고
					물 량	수출액	물 량	수출액	
계	470	220		9,773		518		1,238	
화 훼	16	24	500천속	1,134	11천속	245	25천속	547	
오 이	46	23	569	1,006	119	135	203	230	
밤호박	38	15	1,500	700	28	14	150	80	
멜 론	46	23	22.4	168	5.8	16	11.2	31	
딸 기	324	135	1,642	6,765	213.7	108	693	350	

4.5.2. 추진 성과

○ 지역농산물 수출에 따른 농민 인식 전환

-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품목과 기술 개발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에 대한 수출계기를 마련하여 지역농민들로 하여금 해외시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음(1995년 수출계획: 화훼 547, 오이 230, 밤호박 80, 멜론 31, 딸기 350백만원).

○ 최첨단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 자동화·현대화시설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절감시켰으며, 또한 시설 집단화로 재배기술 공유와 공동출하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전문단지 조성으로 수출 확대

-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별 전문단지 조성으로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촉진

4.5.3. 문제점

○ 지방비 부담 과중 및 소수 농가에 대한 지원 편중

- 대부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품목별 시설 현대화사업(예: 시설채소 유통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중 지방비 부담율(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10%)이 높아 자체 시책개발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으며,
- 보조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소수 농가만이 수혜를 받음으로서 다수농가에 대한 수혜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지원규모 확대로 수혜농가 제한

- 품목별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시 규모가 농가당 1,200~1,500평 이상 첨단시설 건립에 우선 지원됨에 따라 지원 대상농가 제한으로 작물 재배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국내기술 부족으로 농가의 종자 구입비 과다 지출

- 일부 고소득작목(화훼 구근, 멜론 종자)에 대해서는 국내기술 부족으로 자체 생산이 불가하여 외국에서 수입함으로서 농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수입량: 1994~85년 화훼 구근 수입 327백만원, 1995년 멜론 종자 구입 5백만원).

○ 해외시장 정보수집 애로

- 대부분 지역농산물 수출은 수출 대행업체가 수행하고 수출물량이 일본에 편중됨에 따라 해외시장에 과한 유통정보 및 외국인의 기호 등 제반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습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4.5.4. 개선방안

○ 군비 부담 경감 및 다수 농가 지원 확대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단위사업중 시설 자동화와 현대화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정부보조금을 무이자 또는 장기·저리지원(연 3~5%,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전환하여 수혜농가 확대

○ 지원규모 축소

- 기존 품목별 시설 현대화사업에 지원되는 규모를 농가당 1,000평 이하로 축소하여 수혜농가 확대를 통한 재배면적 확보

○ 농산물 연구기관 설립 확대

- 기존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과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시설 및 인력 확충으로 연구전담부서를 통한 각종 종자 개발과 신기술 보급으로 수입 대체효과 증대

○ 수출 전문기관 설치

- 농민들에 대해 신속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농산물 판매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에 수출 전문기관 설립

4.6.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형 축산업 육성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형 축산업 육성에는 축산단지 조성, 축산업의 계열화,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 등 8대 시책이 있으나, 합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추진해 온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발표

4.6.1. 사업 개요

○ 기본 방향

- 부업규모에서 전업기업형 규모 전환과 환경보전형 축사 건립

- 시설 현대화·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 추진 상황

- 한우 사육두수 39천두로서 경남 전체 사육두수의 12%로 도내 1위
- 양돈 사육두수 75천두로서 경남전체 사육두수의 11%로 도내 2위

○ 추진계획

- 축사시설 개선사업
- 공해방지시설
  - 간이정화조: 72개소/302백만원(융자+보조 50%)
  - 정화조: 197개소/1,970백만원(융자+보조 50%)
  - 퇴비처리장비: 5기/50백만원(전액 융자)

○ 지원조건

- 대상자
  - 양축경력 3년 이상, 농과계 졸업자 또는 농민후계자로 3년 이상
  - 영농조합법인 등 협업체
- 축산규모
  - 한우: 번식우 5두 또는 비육우 50두 이상 사육하면서 2년 이내 번식우 30두, 비육우 100두 이상 사육
  - 젖소: 착유우 10두 이상 사육하면서 2년 이내 30두 이상 사육
  - 돼지: 2년 이내 500두 이상 사육
  - 닭: 2년 이내 3만수 이상 사육
- 융자금 지원
  - 1인당 2억 한도
  - 연리 5%(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4.6.2. 추진 성과

○ 시설자금 지원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 부업 및 전업규모의 양축농가에 축사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로 전업·기업농가 육성

기 간	축종별 농가수(호)					사업비(백만원)			
	계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계	융 자	보 조	자 담
1990~94년	193	75	21	85	12	17,607	11,681	51	5,875

- 전업농가 육성 실적

○ 공해방지시설자금 지원으로 환경 오염방지

- 부업농가에 1개소당 4.2백만원을 지원 총 301호에 간이정화조를 설치, 오염방지에 기여
- 전업농가에 1개소당 10백만원을 지원 총 66개소에 정화시설 설치

4.6.3. 문제점

○ 축사시설 개선사업비 축종별 자금 전용 불가

- 한우·젖소·돼지·닭 등 사업비 배정 한도내에서 시군에서 축종별 전용이 불가하여 희망농가가 적은 젖소·닭 사업비를 희망농가가 많은 한우·돼지부문 사용이 불가함.

○ 사업 항목별 단가 지정으로 자금 집행 애로

- 축사시설자금 평당 40만원으로 되어 있어 돈사는 부족하고 우사는 과다하여 사업 지도 및 자금 집행 애로

○ 축산공해방지시설 정화능력 미흡

- 현재 설치된 정화시설은 199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축산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허용기준치(150PPM)에는 미흡한 실정임.

○ 가격 지지정책 및 융자조건 개선

-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이 실효되어 양축농가의 불만이 높아 강력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며, 연리 5%의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융자조건 개선 요망

4.6.4. 개선방안

○ 축사시설 개선사업비 지원요령 지방 자율화
- 축사시설 사업비 지원 한도내에서 시군에서 축종별 조절 가능토록 조치

○ 시설자금 사전 배정 및 항목별 단가 조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 사업 착수금을 지원금액의 50% 범위까지 사전 배경토록 하여 농가부담 경감조치
- 사업계획서 작성시 양축농가의 실정에 맞도록 단가를 양축농가 자율에 일임

○ 획기적인 축산정화시설 개발
- 학계·축산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설치가 용이하고, 정화효과가 높은 정화시설을 개발하여 축산농가가 수질 및 환경 오염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조치

○ 축산물 가격지지정책 강력 추진 및 융자조건 개선
- 현재 축산물가격 안정대를 설정하여 가격 하락시 수매하고 가격 상승시 방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한 수매 방출량으로서는 산지 생축가격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가격 하락시 수매·비축물량을 확대하고,
- 현재 시행중인 축산자금지원 융자조건인 연리 5%(5년 거치 10년 상환)를 연리 3%(10년 거치 10년 상환)로 인하 요망

4.7. 임도개설사업 추진 상황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시책에는 환경임업의 육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임업 기계화 및 노동력 확보, 임도시설확충시책이 있으나, 합천군에서는 전체면적의 74%를 차지하는 임야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도시설에 대한 추진 상황을 발표

4.7.1. 사업 개요

○ 본군 장기시설계획

- 2010년까지 454㎞로 임도밀도 ha당 6.65m 제고

○ 임도 개설 현황

- 기 개설실적: 33㎞
- 1995년 개설계획: 20㎞

○ 지원 내용 및 규모

- 보조사업(시군 시행): ㎞당 49백만원(보조 90%, 자담 10%)
- 융자사업(산주 개인시공): ㎞당 49백만원(전액 융자)

표 11 소유별 임야면적 현황

단위: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71,686	682	2,926	68,078	전체면적의 74%

4.7.2. 추진 성과

○ 본군 임도 개설 실적

단위: ㎞

년도별 / 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33	1	2	3	2	3	2	4	4	5	7

※ 1995년도 지원물량: 20㎞로서 현재 추진중.

4.7.3. 문제점

○ 임도시설 단비 부족

- 시설 대상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당 49백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석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곡부위에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과 제2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산주 자부담 기피

- 임도시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인 임도 개설을 위해 대상지를 선정·결정함으로서 해당 산주들은 임도 개설에 따른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으며,
- 산주 대부분 영세할 뿐 아니라 1㏊ 미만 소규모 산주가 많아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을 기피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금년부터는 산주 자부담분을 전액 군비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어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임도 시설지 사후관리비 부족

- 임도 시공후에도 집중호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임도 유실 및 붕괴로 인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체제가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후관리비는 1995년 기준 본군 임도 33㎞중 9%에 해당하는 3㎞의 물량(국비 5,550천원, 지방비5,550천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4.7.4. 개선방안

○ 임도시설 단비 현실화

- 시설 대상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국유임도 개설단비인 ㎞당 54백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완벽한 임도개설로 사업 효율성 제고

○ 임도시설비중 자부담분 국비 전환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임도시설은 현행 주민자율추진 대상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시켜 임도 시설비중 자부담분

표 12 년도별 임도 개설 비교표

단위: 백만원

구분 \ 년도별	1992	1993	1994	1995	비 고
국유임도	39	46	52	54	농림수산부 책정 단가
민유임도	34	40	44	49	㎞당

을 국비로 대체 요망

○ 사후관리비 증액 지원

- 임도시설의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국도·지방도 관리체계와 유사하게 현행 정부지원 사후관리비를 증액지원 요망

4.8. 행정절차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4.8.1. 농어촌발전대책의 추진절차 개요

○ 시장·군수는 투융자계획과 사업의 신청요령 공고(전년도 12월)
○ 농어민·생산자단체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20일간)
○ 사업신청서 제출(연중 가능)
○ 사업 신청서를 시·군 산업·농정과에 제출(공고 완료일로부터 20일간)
○ 시·군의 업무담당과별 사업 신청서 검토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공개심사와 평가로 대상자 선정
○ 심의결과 공고 및 도에 예산 요구
○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및 농림수산부 예산 신청(30일간)
○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발전대책을 토대로 예산 편성
○ 매년도 11월 10일까지 익년도 예산 편성(안)을 지역별로 가내시
○ 시도, 시군은 익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 대상자 확정 및 공고
○ 소요자금 신청 및 배정

○ 사업 당년 1월 하순부터 농어민 등의 사업 시행 완료후 사업 정산

4.8.2. 추진절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 농촌지도소장의 의견서 작성 애로

- 많은 신청자(약 3,000명)에 대한 개인별로 짧은 검토기간내(2~5일)에 공정한 의견 수렴과 현지방문을 통한 개인면담은 현실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함.

○ 사업계획서 작성 애로

- 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 서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 신청자(농어민)의 사업계획서(서류 준비) 작성 애로

○ 융자 취급기관의 신용 검토 애로

- 사업 신청서 검토시 당해 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융자 취급기관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고, 융자취급기관은 검토의견서를 2일내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의 근무시간내 금융 조회 및 많은 인원(약 3,000명)에 대한 신용 검토 불가

○ 농어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및 전체위원회 심의 애로

- 사업 신청자 전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현장검토가 불가함으로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심의위원들의 지역연고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심의위원의 기술적 전문성 결여로 실질적인 심의가 불가함.

○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결과 홍보 부적정

-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및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농어촌발전심의 결과를 군·읍·면 홍보지·반회 등에 사업명·금액·대상자 명단을 게재하여 홍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의 예산 변경(예산 삭감)시 행정의 공신력 실추

4.8.3. 해소방안

○ 농촌지도소의 검토의견서 작성기간을 별도 명시하거나 꼭 필요한

중요사업(대규모)에 한하여 의견서 작성

- ○ 사업계획서는 농어민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서식으로 변경
- ○ 사업자에 대한 신용상태 검토의견은 약 10백만원 이상에 한하여 검토토록 하거나 검토기간을 5일 이상으로 확대
- ○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위원수를 축소(20명 정도)하여 전문화하고, 시군의 검토·심의·확정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확대
- ○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결과 홍보는 농림수산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자와 사업비가 확정된 후 홍보 실시

5. 종합건의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을 근간으로 지역농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도·운영상 나타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키 위함.

5.1. 지방 농정 관련부서 인력 보강

5.1.1. 현황 및 문제점

- ○ 농산물 수입개방, 구조개선사업 추진, 통합실시요령 추진으로 일선 시군의 농정업무가 복잡·전문화되고 있고,
- ○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농정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산재되어 있으며,
- ○ 일선 농정조직 1과 5계로 정원 17~18명으로는 현 농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5.1.2. 건 의

○ 현 농정담당공무원 정원 보강 또는 현조직 1과를 2과로 조정(내무부, 농림수산부).

5.2. 농정분야 업무 이관과 자금 지원방식 개편

5.2.1. 현황 및 문제점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거 275개 단위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집행·평가 등을 농림수산부에서 총괄하고,

○ 인허가업무(농지전용업무 등)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부문 위임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결정함으로서,

○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자율방식의 농민 의견 수렴기능에만 치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농정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 중앙부처 추진 자금지원기준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적재적소의 사업 추진 애로

5.2.2. 건 의

○ 농어민 자율사업이 실질적인 자율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선택·사업계획 수립·평가·집행·자금 배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중앙부처는 확인·조정기능 담당

○ 시군별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재원 부담률을 융통성 있게 운영

-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국도비 지원비율 상향 책정

5.3.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대상사업 통폐합

5.3.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농림수산사업 수는 275개로서 너무 과다하여 유사사업 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 많아 농민들의 사업 추진에 혼선 초래

5.3.2. 건 의

○ 유사사업 통폐합 추진(확대·축소·폐지) 등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항목 재조정 필요

예) - 확대지원할 사업: 쌀 전업농 육성, 공동농기계보관 창고설치,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 화훼 생산·유통지원, 고랭지 생산·유통 지원,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

- 축소할 사업: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 폐지할 사업: 공통퇴비장 설치

5.4. 경지정리사업 단비 상향

5.4.1. 현황 및 문제점

○ ha당 단비가 낮아 용·배수로 구조물화, 소하천 호안 정비 등 경작자 요구사항 미충족 - 민원 야기

- 1995년 봄 마무리: 18,350천원
- 1995년 가을 착수: 19,270천원

○ 예산단가에 대한 국비 80% 정액지원으로 지방비 부담 가중(실부담율 30%).

5.4.2. 건 의

○ ha당 단비 인상 및 실소요사업비에 대한 국고 정율 지원 요망

- 일반경지정리 24,000천원/ha 이상
- 재 경지정리 25,000천원/ha 이상

○ 일반경지정리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요망(80% → 90%)

5.5. 농업진흥지역내 농업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5.5.1. 현황 및 문제점

○ 농발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내 시설물은 부지면적 3,000㎡ 미만으로 규제

○ 미곡 종합처리장 등 3,000㎡ 이상 부지가 소요되는 시설은 설치불가

5.5.2. 건 의

○ 농업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3,000㎡ → 10,000㎡

5.6. 쌀 전업농 육성사업 개선

5.6.1. 현황 및 문제점

○ 쌀 전업농으로 선정된 자가 농지를 매입코자 해도 매도요건에 맞는 적당한 농지가 부족하고 농기계만 구입목적으로 쌀 전업농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농지 구입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많음.

5.6.2. 건 의

○ 쌀 전업농에게 매도조건을 완화하여 농지규모 확대 조치(현행 65세 은퇴농을 60세로 하향 조정과 겸업농가의 농지매도를 현행 2ha 이상에서 1ha 이상 농가로 하향 조정).

○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농지 구입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한 후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농기계와 영농규모 확대사업으로 구분 선정(농기계 구입시 최소면적 3~5ha이상 확보시 지원).

5.7. 농정시책사업비 농가 지원방식 개선

5.7.1. 현황 및 문제점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농민 자율사업 70개 단위사업중 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사업에 투자되는 많은 사업비중 보조금이 50% 내외 지원됨으로서 소수 농가만 수혜를 받고 있어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의욕을 사고 있으며, 지원받은 자는 자기자본이 적게 투자가 됨으로서 생산의욕이 감퇴되고 있음(유리온실 1,000평 건립시 사업비가 4억원으로서 2인이 공동 참여할 경우 보조가 50%인 관계로 1인당 1억원씩 지원되고 있음).

5.7.2. 건 의

○ 생산기반시설(경지정리, 수리시설 등)은 보조율을 높이고 개인소득에 투자되는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정부보조금으로 무이자 장기융자(5~10년) 지원으로 수혜농가 확대(보조금 지원보다 융자금 지원이 사업 추진에 대한 농민의 열의가 강하고 융자금 회수로 재투자 함으로서 수혜농가를 확대시키는 장점이 있음).

빈 면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성과와 과제

설 광 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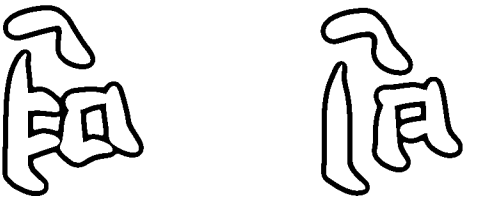

제3주제 발표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성과와 과제

설 광 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농어촌발전대책이 발표된 지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는 것은 무리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지난 1년동안 여러 가지 법령의 정비나 제도적 정비작업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이나 재원의 투입은 사실상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정책이 시행 초기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굳이 의의를 찾는다면, 1년전 UR 타결이라는 엄청난 상황변화를 맞고 위기의식 속에서 마련된 각종 대책을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차분한 심정으로 되새겨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무리한 작업인 줄 알면서도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하기로 한다.

(1) 경쟁력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2) 무엇이 추진되었고, 추진되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3) 이미 설정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새로운 환경 변화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정책과제가 필요한가?

2.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주요 내용

1년 전 정부는 WTO 출범에 대비하고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수산 관련 시책과 제도, 정책 담당자의 시각, 정책 추진방식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개혁적 접근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 ○ 개방시대에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고 갈 프로 정신을 갖춘 농어업가를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양성한다.
- ○ 농어업이 현대적 산업의 하나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적 장벽을 제거한다.
- ○ 농어민·농어촌이 농수산물의 단순한 생산자·생활기지로 부터 유통·가공에도 참여하는 기업가로, 복합적 생산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꾼다.
- ○ 낙후된 생산기반을 단시간에 현대화함으로써 기계화·자동화된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며, 고품질의 기술·자본 집약적인 농어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재정비한다.
- ○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어업과 임업, 축산업문제도 구조조정의 핵심 정책과제로 다룬다.

위의 정책 방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10대 핵심시책을 선정하였다.

(1) 농어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 농어가 15만호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경영능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전업 농어가를 선정하여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시설 자동화 등을

종합지원한다. 그리고 농림수산 전문기술대학을 설치하고, 도별로 1~2개의 자영 농수산 고교를 육성하며, 졸업생을 농어민 후계자로 우선 선정하여 병역특혜를 부여한다. 농어민 후계자는 경영성과에 따라 후속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전업농, 선도 농어가로 단계적 성장을 유도한다.

(2)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영농을 발전시키고,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유기농업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품질 차별화를 유도하여 소규모 경영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를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와의 계약생산, 전문 판매망의 설치를 지원한다.

(3) 농어업의 경영 현대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한다.

(4) 농지제도를 과감히 개혁, 경영혁신을 뒷받침한다.

(5) 생산, 유통, 가공, 판매의 계열화로 농어민이 주도하는 1·2·3차 산업의 복합산업으로 농수산업을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어민이 생산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판매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를 육성한다. 또한 농어업의 복합산업화를 위하여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에 대한 식품 제조 가공업의 인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품목 허가제는 폐지한다.

(6) 기계화, 자동화의 영농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정비와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1998년까지 진흥지역내의 논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2004년까지 20만ha를 재경지정리 한다. 농지매매 지원과 교환·분합사업을 전업농 위주로 확대 실시하며, 벼농사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대형농기계의 일관작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직파기계, 무인헬기 등을 개발 실용화한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실수요 농가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계속 추진한다. 축산, 원예단지를 중심으로 시설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 장비를 국산화하고 수출 대상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 모델을

보급한다.

(7) 기술집약적 농업, 환경보전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특히, 농어촌 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농어민과 전문가가 현장에서 공동 연구하는 실용기술 개발을 실시한다. 그리고 농어업 분야의 첨단기술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10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여 품종 개량, 시설 자동화, 환경농업 등의 기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8) 품질 위주의 농어업 경영 촉진으로 경쟁우위 확보 및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품종 개량, 유기농법, 저장 및 보관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농수산물의 고급 상품화를 추진한다.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 표준출하규격 등을 통하여 규격품 출하를 확대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과일, 화훼, 시설 채소류, 돼지고기 등 고품질 규격품의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9)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형 축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축산분뇨의 비료화를 가능케 하는 축사를 개발·보급하며, 축산 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 원료의 수입관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10) 기르는 어업과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장을 신규개발하고, 인공어초 시설과 치어 생산·방류를 확대하며, 노후어선의 교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규모 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시설 등 국가 어항 83개 및 지방 어항 324개소를 조기에 정비한다. 경제림 조성과 함께 휴양림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충하고 수종 개량과 조림방법의 다양화로 경제임업을 유도하며, 산림작업의 기계화·생력화를 위한 임도시설 확충과 산촌의 도로, 통신여건 개선을 통하여 임업구조를 개선하여 산촌 정주기반을 조성한다.

이상의 10대 시책이 확정된 이후 실제로 무엇이 추진되었고, 현재 무

엇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경쟁력강화대책의 1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절차일 것이다.

3. 경쟁력강화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1994년 6월 14일에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을 확정한 후, 정부가 추진한 첫번째 일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10대 시책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이었다. 이번의 세부실천계획은 단순한 도상연습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부실천계획을 재원 면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투융자 기본계획과 농특세 등 재원 확보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종전의 농정계획과는 구분되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2001년까지 투융자하기로 한 42조원 계획을 앞당겨 1998년까지 집행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에 집중투자하며, 특히 1995~98년 기간중에 중앙정부 지원규모 25조원 중에서 경쟁력 제고에 23조 2천억원을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추가적으로 확보될 농특세 15조원의 60.5%를 농어업 경쟁력 강화부분에 투입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정의 중심이 경쟁력 기반조성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표 1,2 참조).

지난 한해 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정책 수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써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 농정조직 등에 대한 주요한 제도개혁을 일단 마무리함으로써 농정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농발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로서 농지법, 협동조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안법 등 19개 관련 법률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정, 개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제도 개혁의 중요한 내용은(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법령 정비가 아닌 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농어민의 창의와

자조역량을 극대화하고, 지방농정의 활성화 및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농어촌 지원사업의 추진방식을 종전의 하향식 방식에서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농림수산부가 통합실시요령을 제정하여 농림수산사업의 집행을 공개화하고, 정형화시킨 것은 농정사에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 조치로 평가될 만한 것이다.

앞으로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정책 수행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부가 모든 지원사업의 내용을 농어민에게 미리 알리고 경영상담, 사업의 선택과 계획, 점검과 평가를 체계화하여 농어민의 자율역량을 확대하려고 한 점과, 예산신청단계부터 지역농어민이 참여한 농어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시도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면, 지역의 특성과 사업자의 사전계획 및 현장성을 연계시킨 계획성 있는 사업 집행으로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사업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42조원 투융자사업과 농특세 15조원의 낭비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농정 추진방식이 성공하려면 농어민의 노력은 물론 지방정부의 농정기획능력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그리고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평가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에서 간과되기 쉬우나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또 하나의 사업은 농어가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향후 전업농육성과 농가경영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정책 결정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비효율성이나 재원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1995년 계획을 근거로 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올해가 사실상

농발대책 실시의 원년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과의 측정 또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먼저 10대 추진시책의 첫번째 사항인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정부는 10년간 가족전업농 15만호를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1995년에 1차적으로 사업 대상자 1만 5천호를 선정하였다. 그중 쌀 전업농 1만호, 밭작물 194호, 채소 812호, 특작 291호, 화훼 100호, 어업 243호, 축산 3,000호를 각각 선정하고 올해 중에 총 8,672억원을 지원할 생각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쌀 전업농에게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2,350억원(호당 2,350만원)과 농지 규모화자금 2,800억원(호당 2,800만원)을 지원하고, 밭작물과 채소 전업농 등에는 1,000억원(호당 5천만원)을, 축산 전업농에게는 총 3,52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선도농어가는 10년간 970명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1995년에는 70명을 사업 대상자로 하고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호당 5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1996년부터 2044년까지는 매년 100명씩 추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1995년부터 매년 1만명씩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계획하에 사업자금지원금액을 개별농가의 사업계획에 따라 1,500~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정예영농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지역현장에 맞는 실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하에 내년부터 4년제 농과대학을 지역과 기능-분야에 따라 특성화대학으로 지정, 총 예산 700억원 범위내에서 특성화에 맞는 첨단농어업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실습 위주의 교과운영으로 과학영농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게 될 농림수산 전문대학 설치문제는 1996~97년에 개교를 목표로 현재 법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리고 자영농수산고교의 육성은 도별, 해역별로 1개교씩을 지정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으며,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학교당 3년간 40~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 관련 학교들의 설립이나 지원문제는 후계자교육이란 측면에서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교육기관의 설립지원 못지않

게 중요한 것은 농어업의 작업환경과 직업으로서의 매력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농업계 학교의 학생 확보나 졸업생의 농어업 종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유기농업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소량 다품종 체제의 발전을 위해서, 유기자연농업 단지를 매년 100개소씩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1995년에 가급적 상수도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상 단지 및 대상 농민을 선정하고 단지당 2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농협과 서울시가 협력하여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기농업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것을 발표하여 이 사업의 장래를 밝게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의 계약생산 및 전문판매장 설치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소비자협동조합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협동조합이 법적 근거를 갖추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농어업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농업회사법인제도의 도입은 법령 정비에 따라 상법상의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가능토록 되었고, 비농민의 자본 출자를 허용하되, 그 한도를 총출자액의 49% 이내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소유를 허용하였다.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보유년수를 규정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소유농지 매각시 매각 대상자를 다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에 한정시켰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도 생산, 농작업 수탁, 농산물 판매, 저장, 유통, 가공 등 농업 관련 제반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법인의 설립구역 제한과 조합원자격 제한을 폐지하여 농수산물의 광역단위 수급조절 애로를 해소하고 조합법인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동시에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였다.

농지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건국후 처음으로 농지에 대한 통합된 농지법을 제정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를 정립

하였다. 1996년부터 시행될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내 소유상한과 통작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비농가에게도 일정 규모 이하의 한계농지 취득을 허용하였으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농지전용의 개념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 개량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됨으로써 작목 전환이 용이하도록 되었고, 농업경영을 위한 형질 변경도 가능토록 하였다.

생산, 유통, 가공·판매의 계열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농민 소득화를 위하여 품목별 전문 생산자조직을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농협 주관하에 쌀 작목반을 구성하고 작목반 운영자금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미곡 종합처리장을 쌀 생산·유통업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5년에 48개소(생산자단체 23, 일반사업자 25)를 선정하여 생산자단체에게는 개소당 14억원(보조 7, 융자 4.2, 자부담 2.8)을, 일반업자에게는 4억원(융자 2, 자부담 2)을 지원하며, 1995년도 원료별 매입자금으로 860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채소류에 관해서는 1995년도 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 및 세부지원계획을 확정, 80개소에 총 2,1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수·화훼부분에서도 1995년에 과수분야 120개소, 화훼분야 15개소를 지정하여 각각 1,380억원과 579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축산 계열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0년까지 10개소의 종합처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1994년에 3개 사업 대상자(서울경기양돈조합, 안성축산진흥공사, 한국유통)를 선정하였고, 1995년에 143억원을 융자하게 되어 있다.

농어민과 생산자단체의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제도 개선사업은 1994년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허가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생산기반 정비와 이에 관련된 지원제도에 있어서는 진흥지역내 논 경지정리와 대구획경지재정리, 기계화지원, 경작로 확·포장, 직파기계 보급

과 농기계 구입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흥지역내의 논 경지정리는 1994년에 시작된 가을 착수사업 27,700ha가 완료단계에 있고, 1995년 가을 착수 예정지 3만ha에 대한 기본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대구획 경지정리는 2004년까지 20만ha를 완료한다는 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1994년에 5천ha를 신규 착수하여 1995년중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1995년 가을 착수사업 예정지 2만 5천ha에 대한 기본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010년까지 경지정리가 된 농지의 주요 간선 및 지선 경작로 22,000㎞를 확장·포장한다는 계획하에 1차년도인 1995년에는 187억원을 투입하여 200㎞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농지임대차, 매매, 교환·분합사업은 쌀 전업농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하에 지원한도를 소유농지를 포함하여 5ha까지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1995년도 지원자금으로 2,800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벼 직파기 확대공급은 1995년에 9,170대를 생산·보급할 예정이다. 농기계 공급지원을 위해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에서 탈락된 농가에 대한 융자를 보완(연리 5% 1년 거치 5~7년 균분상환조건)하고, 1995년에 14억 7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 개발과 지원체계의 혁신대책은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를 각 지역에서 접수하여 과제 선정작업중에 있으며, 선정될 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1995년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 산업화는 아직 추진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품질인증제는 이미 1994년부터 실시하여 1995년 3월 현재 56개 품목에 17,270톤이 출하되고 있으며, 표준출하규격 확대실시사업은 1995년 3월 현재 85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고, 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1995년에 포장재 지원, 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 포장센타 설치 등에 국고보조 130억원과 융자 1,300억원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경쟁력 있는 과일, 화훼, 시설채소류, 돼지고기 등의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1995년에 1차적으로 50개소를 선정하고 생산, 유통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33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을 위하여 1995년에 1,095억원을 농특회

계에서 마련하여 개별농가의 정화시설과 축분발효시설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축산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토록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사료 원료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도 할당관세를 운용함으로써 사실상 관세 인하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수산업 관련 지원사업도 어장 정화사업으로 어장 정화선, 어장 청소선을 건조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건조중에 있으며, 굴 양식장 환경 개선의 숙원사업인 굴 패각처리공장을 199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종묘배양장 등의 시설 확충, 공동어장의 양식장화, 어로시설 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대규모 양육항의 수산물 종합처리장 설치, 대도시 주변의 수산물 직판장 설치, 연근해 어선세력 감축 등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과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1995년에는 2,064톤을 감척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총사업비 13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한편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연근해 수산물에 대한 산지 수협위판장 상장제도를 1995년부터 자유판매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1997년에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임업 육성분야에서도 수종 개량과 조림방법의 다양화사업을 위해 1995년에 542억원(자부담 71억원 포함)을 투입하여 2만 4천ha를 조림할 계획이며, 임도시설 확충에는 1,016억원(자부담 74억원)을 투입하여 1,992㎞의 임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임업 기계화 추진을 위하여 임업 기계 및 장비의 보급에 필요한 예산 115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임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목재 주산지의 집하장 설치, 육림 및 간벌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박물관, 지방 수목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다. 또한 임업협업경영체를 2004년까지 328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1995년 5월 현재 187개의 설립을 완료하였다.

이상에서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근거로 하여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당초에 계획한 10대 시책과제를 상당 부분 실천에 옮기고 있고, 재원이 뒷받침된 구체적 세부실행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농어민들에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을뿐만 아니라 경쟁력 대책이 모든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성격을 갖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만족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농발대책이 끝나는 2004년이 되어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경쟁력 강화대책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미래의 농업을 이끌고 갈 전문농업인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는지의 정도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지, 현재의 농민 모두가 만족하느냐 여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4. 향후 과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가장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농업 종사자는 물론 비농업 종사자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금의 효율적 이용문제인 것 같다. 자금의 효율적 이용문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될 것이다.

- ○ 42조원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 농특세를 농림어업에 투자한다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 많은 돈을 누가 어디에 사용하게 되는가?
- ○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데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불필요한 투자를 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가?

○ 지금도 농림어업 관련 회계와 기금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예산 낭비가 많은데 농특세까지 생겼으니 아무래도 농림수산 관련 기금이나 회계를 통폐합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야겠는데 어디를 어떻게 손을 봐야 하나?

○ 42조원 투자 이야기는 벌써 몇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농촌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적이 없는 판에 이 돈을 다 쓰고 난 몇 년후라고 뭐가 달라질까?

○ 농촌을 살리라고 돈은 많이 확보해 주었는데 이것을 어디다 써야하나? 각 지방마다 손 벌리는 사람은 많은데 알고 보니 막상 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적은 것 아닌가?

○ 지방 행정기관에서 누구에게 융자해 주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지시가 내려왔지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일 것이 분명한데 융자를 해주어야 하나? 나중에 책임만 우리보고 지라고 할 것 아닌가?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에 앞서 앞으로 사용 가능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42조원 투융자계획에 따라 확보된 정부 재원은 35조 3,977억원(자부담 제외)인데, 이 중에서 1994년까지 집행된 10조 3,488억원과 1995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4조 7,626억원을 제외하면 향후 1998년까지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20조 2,863억원이다(표 1 참조). 여기에 매년 농특세에 의한 자금 4조 5천억원을 더하면 1998년까지 24조 7,86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자금은 20조 8,000억원 정도로서 전체 재원의 84%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이 적지 않은 돈을 3년안에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3년 후에도 이 돈의 상당부분이 살아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민간이 할 가능성

이 희박한 부분과 농업분야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보조를 줄이고 융자를 늘여 나감으로써 상환되는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잘 선별하는 작업이 첫번째 과제이다.

두번째 과제로서는 사업량 목표 달성보다는 질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고 매년 계획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흥지역내의 논을 계획기간내에 100% 경지정리를 끝낸다는 양적인 목표를 무리하게 달성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사업 단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량의 80%만 달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경지정리를 하겠다는 접근태도를 갖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품목별 종사자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및 소관 부서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농림어업 관련 정책자금의 정리가 있어 왔지만 아직도 농업재정 지원체계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각 기금 및 자금의 운영주체도 분산되어 있어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투자와 보조사업은 농특회계로 1원화시키고, 기금은 융자사업만을 담당하여 회전자금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각종 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조개선 관련 투자 및 보조사업은 농특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산발전기금의 문제도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축발기금의 융자는 타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융자금액이 큰 반면, 양축농가의 담보능력 부족과 수입개방 이후의 축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자금 집행이 부진한 상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다른 농업분야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축발기금의 조성이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부과금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자금수요에 관계없이 축산분야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UR 타결로 부과금 수입이 줄어들면 자동 해결될 문제를 왜 건드리느냐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자동 해결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지 못하다. 기금

운영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축발기금의 기능 중에서 수매, 비축, 출하조절사업 관련 부분은 농안기금에 흡수시키고, 나머지 사업은 농특회계로 이전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당분간 축협중앙회 신용사업의 수지 악화와 농림수산부 축산국의 영향력 위축이라는 현상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의 효율적 사용이란 측면에서 보면 자금지원 대상자의 올바른 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통합실시요령이라는 좋은 제도 속에서도 여전히 융자 대상자 선정의 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자금 신청 대상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로 한정되어 있고, 지방 행정기관이 결정권을 갖게 되어 있다. 우리가 막연히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마치 공정성을 갖춘 큰 집단으로서 융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가진, 그것도 금융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한 한 두명이 이 일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 의해 당선된 군수가 정실에 의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 물론 농어촌지도소장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것이 있어 여러 사람의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겠지만 각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과정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농어촌 금융기관은 비교적 그 지역의 개별 농어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신용 평가능력이나 사업성 여부 및 소요자금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정기관보다는 낫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에는 농림어업분야의 재원 확보가 주요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갑자기 늘어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권에 대한 융자담당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재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일 것이다.

UR 타결이라는 큰 파도가 지나간 지 1년이 조금 지난 지금 그 동안 우리에게 막연하게만 느껴져 오던 새로운 변화가 이제는 구체화되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OECD 가입이고, 두번째

는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이다.

OECD 가입이 농업에 미칠 영향은 UR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OECD에 가입하면 국내농업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개방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작아질 수도 있다. 특히, OECD 회원국이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을 수 있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라 농업연관분야에 외국 자본이 직접 참여할 경우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의 변화가 농업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농업 융자지원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가를 미리 검토하여 대처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은 중앙 정부가 세워 놓은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부 수정을 불가피하게 할지도 모른다. 지방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르고, 농업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산업적 비중이나 선거권을 가진 농어민의 구성요소가 다를 경우, 중앙정부가 애초에 세워 놓은 각종 시책의 집중이 중앙의 의도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농업이 중요한 비중을 가진 지역에서는 농업부문에 필요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농업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농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요구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와 함께 농정에 있어서 어느 분야까지를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인가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문제 그리고 지방정부의 농업정책이 단기적인 혜택 부여보다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투융자지원사업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의 모색 등이 새로운 과제로 떠 오를 것이다.

물론 통합실시요령이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훌륭한 제도이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기획, 상담, 지도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력의 확보나 교육훈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머리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의문을 마지막 과제로 던져 보고자 한다. 경쟁력강화대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책이 계획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몇 년까지 무엇을 몇 개 조성하고, 몇 명을 양성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얼마를 보조·융자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공적 성격의 사업에는 이러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가 당연히 보조를 하여야 하겠지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나 기계에 대해서도 계획경제방식의 보조지원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옳은 접근인가 하는 점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금은 한번 지급되고 나면 다시는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이다. 만약 정부가 개별 농민의 자립기반을 초기단계에 만들어 준다는 의도하에 개별 농가에게 보조를 지급하였는데, 그 농가가 몇 년 후 농업을 떠나게 되면 그 동안 지급된 보조금은 영원히 농업에 돌아오지 않는다. 정부의 지나친 개별 보조는 보조의 매력 때문에 사업가능성이나 자신의 경영능력과 상관없이 보조가 많은 사업에 사업 신청자를 몰리게 하고, 시급하지 않는 기계를 구입하게 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많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의도하는 농업가가 비지니스 감각을 가진 농업가라면 보조보다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채택함으로써 처음부터 자금계획과 사업의 장래성, 자금상환계획 등을 염두에 두도록 해야 하고, 보조금을 융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 농가에게 훨씬 많은 융자자금의 이용기회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UR 협상결과에 따라 앞으로 보조금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향후 10년 동안 보조를 이렇게 늘여나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 만약 문제가 있다면 보조금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표 1 42조원 투융자계획

단위: 억원

사 업 명	합 계 (92~98)	92~94	95예산	96~98 예 산	주요 사업 내용
1. 인력육성	23,576	6,827	3,993	12,756	· 후계자, 전업농 육성
2. 생산기반	86,063	23,438	11,414	51,121	· 경지정리, 용수개발, 밭기반 정비 등
3. 농업기계화	30,720	9,729	4,030	16,961	· 농기계 반값공급, 일반융자, 농기계 이용조직
4. 영농규모화	25,408	9,915	2,809	12,684	· 농지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5. 축산구조개선	55,053	16,853	7,214	30,986	·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축산단지, 가축 계열화
6. 기술개발	12,226	3,624	1,595	7,007	· 연구개발, 기술보급 등
7. 유통개선	22,477	5,976	3,044	13,457	· 도매시장, 산지가공, 산지유통시설
8. 시설현대화	17,699	3,967	2,555	11,177	· 과수, 채소, 화훼, 생산 및 유통지원, 잠업·특작
9. 어업구조개선	24,225	7,253	3,162	13,810	· 수산자원조성, 어항건설
10. 임업구조개선	21,500	7,032	2,848	11,620	· 유림, 조림, 임도 등
11. 소득원개발	24,682	6,654	3,518	14,510	· 농공단지, 관광휴양자원
12. 생활환경개선	10,348	2,220	1,444	6,684	· 주택개량, 정주권개발 등
정 부 예 산	297,797	91,893	42,626	191,863	
축산발전기금	27,595	11,595	5,000	11,000	· 1996년 이후는 년간 3,700억 원 수준 반영
합 계	353,977	103,488	47,626	202,863	

표 2 1995년 농어촌특별세 예산

단위: 억원

사 업 명	총 소 요	1994년 추경	1995년 예산		
			계	국 고	지 방 비
합 계	150,000	3,480	15,432	11,019	4,413
1. 농어업경쟁력 강화	90,775 (60.5%)	1,670 (48.0%)	9,273 (60.1%)	7,659	1,614
• 경지재정리	43,000	320	2,931	2,350	581
• 유통개선	14,550	700	1,870	1,606	264
• 중소농지원	2,000	-	200	150	50
• 농신보기금출연	7,000	200	800	800	-
• 농어업기술개발	5,040	150	676	676	-
• 기술전문대학육성	2,500	-	362	362	-
• 어항건설	7,800	300	1,199	1,012	187
• 양식어장 및 어촌종합개발	5,735	-	569	333	236
• 임도개발	3,150	-	666	370	296
2. 농어촌생활여건개선	41,040 (27.4%)	1,450 (41.7%)	4,225 (27.4%)	1,625	2,600
• 농어촌도로정비	12,000	650	1,200	-	1,200
• 농어촌하수도정비	7,000	-	800	-	800
• 농어촌주택개량	8,000	400	800	800	-
• 농어촌폐기물처리	2,040	-	225	225	-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2,000	400	1,200	600	600
3. 농어민복지증진	18,185 (12.1%)	360 (10.3%)	1,934 (12.5%)	1,735	199
• 농어민연금제	8,000	10	455	455	-
• 농어촌의료서비스	4,785	200	801	667	134
• 학자금융자·학과개편	2,100	100	350	350	-
• 유학생기숙사건립	360	-	40	20	20
• 공공도서관 건립	940	-	100	55	45
•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	800	50	96	96	-
• 농어민 직업훈련	1,200	-	92	92	-

표 3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

법 령 명	주요 제·개정내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중 3년 이상 영농 및 군단위 거주요건 폐지 · 농업회사법인제도의 근거 도입 · 농업인, 어업인에 대한 용어 정의
농·수·축·임협법	· 품목조합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신용·경제 독립사업부제 실시 · 농림수산부문 협동조합간 협의회 설치
농지법(제정)	· 농지소유 및 거래규제 완화 · 농지이용계획제도 도입 · 농업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부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지의 장기 임대차 활성화 · 농지매매사업 등에 의하여 구입한 농지의 전매 등의 제한
농업기계화촉진법	· 농업기계의 범위에 자동화시설 포함 · 기계의무검사에서 임의검사로 전환 ·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자금 지원
산림법	· 산림이용체제를 개편하여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조정 · 산림사업을 공익법인에 위탁 · 유휴토지의 산림 전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법인 설치근거 마련 ·중매인제도에서 중도매인제도로 전환 ·산지 수집상 등록제도의 도입

표 3(계속)

법 령 명	주요 제·개정내용
사료관리법	· 사료 제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추천제 신설 · 사료 판매가격 지정제도의 폐지
잠업법	· 제사업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누에씨 생산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인삼사업법	· 홍삼류 판매제한(담배인삼공사 또는 공사지정받은 자)해제
조세감면규제법	· 축산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지방세법	· 축산, 고정식온실, 창고 등의 취득세 감면(50/100) · 농지의 교환·분합시 취득·등록세 면제
상속세법	· 상속공제를 확대하여 주택 등과는 별도로 농지는 1억원까지 공제
소득세법	· 산림소득공제를 연간 1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빈 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대책의 성과와 과제

정 명 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4주제 발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대책의 성과와 과제

정 명 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농어촌발전대책중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대책

1.1. 농어촌발전대책중 농촌·농민정책 방향

○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및 뒤떨어진 생활환경과 복지여건 등으로 농어민의 심한 박탈감과 영농의욕 감퇴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음.

○ 우리 농수산업의 체질이 이와 같이 취약한 상태에서 UR 협상과 WTO의 출범 등 농업의 국제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이제 이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을 추구해야만 하게 되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국내적 여건을 극복하고 국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농어촌발전대책을 구상하게 됨.

○ 농어촌발전대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산업으로서 농수산업의 체질강

화와 식량 자급력을 향상시키며, 농어촌을 다양한 산업입지와 생활공간으로 개발하고, 농어민의 복지 수준을 도시민에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임.

○ 특히,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농 통합적 생활권 개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2·3차 산업 개발을 통한 소득원을 개발하며,

○ 농어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문화여건 개선과 사회보험제도의 확립 및 지역 농어민단체를 육성하여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1.2.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도농 통합적 생활권 개발

- 농어촌은 1·2·3차 산업이 혼재하는 복합산업지역 또는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함께 살아가는 현대적 생활공간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
- 도농 통합적 생활권 개발체계를 확립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도록 하되 지역특성과 중심도시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간 차별성 있는 생활권 개발체계 수립
- 소득 보상적 사업을 소득기회 및 생활여건 조성 우선투자 전략방식으로 전환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와 연계된 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의 산업 진흥

- 농어촌지역 2·3차 산업 개발은 지역산업과 결합된 복합화 전략 추진(농림수산물 가공산업, 저장, 유통산업, 관광농림어업 등)
- 탈농하는 농어민의 재촌취업과 고용 촉진을 위한 기술훈련 및 농림수산업 관련 직업훈련의 강화 및 다양화

- 농어촌 산업 개발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와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지연산업 창업 지원 및 지역산업 활성화

○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충과 투자의 효율화

- 농어촌 도로 확포장, 물류센터 건립, 산업용수 개발, 어항 개발 등 생산적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
-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농어촌 버스운행 지원, 생활용수개발 등 생활 지원적 사회간접자본의 개발
- 농어촌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매체 공급과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구축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선

○ 조건불리지역의 진흥

- 어촌, 산촌 및 도서, 오·벽지는 생활여건이 불리하므로 이들 지역이 가진 독특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발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 지방정부의 자율적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어촌 및 도서지역 유형별 개발전략 추진
- 산촌지역은 산지자원, 산림자원, 자연경관 조성과 이용을 포함한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추진(산림도시 개발, 다목적 산림조성개발, 관광 개발 등)
- 조건불리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서개발촉진법」이나 「오지개발촉진법」 등을 통폐합하여 법을 일원화하고 지역별 특선과 창의적 노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 농어촌의 환경 보전

- 농어촌 생활 오폐수, 축산폐수, 쓰레기, 농약 사용, 폐어망·어구의 폐기 등에 의한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 어장 오염 등을 막기 위한 농어촌 환경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오염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의 예방책 강구 및 재활용의 촉진 강화

1.3. 농어민 복지 증진

○ 도시민에 뒤떨어지지 않는 농어민 복지대책 개발
- 농어민의 생활환경이나 의료, 교육 등 복지서비스가 열악하면 소득이 있어도 사기를 잃고 이농하게 되므로 농어촌도 도시에 못지 않는 환경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농어민 복지대책을 개발

○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 농어촌 노후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공동학습시설의 확충, 급식의 확대 등 농어촌 학교 학생의 복지후생지원 강화
-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복식학습 운영 등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교육방법의 혁신
- 농어촌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고교 육성 및 농어촌학교 농어민자녀들의 대학 진학기회 확대
- 도시민에 비해 과중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민 자녀의 학비 감면혜택 확대 및 학비 지원 수준 강화
- 농어촌 학교의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농어촌 학교 교사의 경제적 지원, 해외 연수기회 확대, 관사 제공 등 우대책 강구
- 농어촌 학교가 지역사회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문화시설과 교육시설 설치 등 학교의 지역사회문화센터체제의 구축

○ 농어촌의료서비스의 개선과 통합의료보험 실시
- 국민건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보건 의료시설, 인력 및 예방의료사업 강화
- 의료보험 진료지역 제한과 급여기간 제한 및 정기검진과 고가장

비 이용 등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의료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 형평에 맞는 부담과 공평한 의료혜택을 보장하며, 질병 위험 분산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의료보험 통합관리체계의 실현

○ 국민연금의 확대와 농어업 경영이양장려연금제도 실시

- 농어촌인구 노령화와 노령농민 노후보장대책을 위한 농어촌연금제도의 조기 실시
- 국민연금 실시 초기에 연금 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노령농민의 노후보장과 농어업 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농어민이 농어업 경영이양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장려연금제도 실시

○ 농림어업 산업재해 및 농림수산물 재해대책 강구

- 농림수산업 노동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기계 안전장치의 개발과 부착, 안전농약의 개발, 사용법의 준수, 농기계 운전교육의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농림어업 산업재해안전법」의 제정
- 농어민의 농작업사고 사후대책으로서 일반노동자 산업재해보험제도의 농어민 확대 실시 또는 농협 공제사업중 농어민에게 혜택이 큰 농작업 상해공제제도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강화
- 농작물의 자연재해대책중 불합리한 보상규정, 피해보상의 대상지역 제한, 피해보상 제한규정 등의 수정 또는 완화를 통한 농어업 재해보상제도의 확대 강화
- 농어업 재해보상은 영세농의 최저수준 보장목적이 크므로 앞으로 규모화, 전업농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농어업 재해보험 또는 농수산물 재해공제제도의 단계적 도입
- 불량 종자, 종묘, 종패와 불량 농자재에 의한 농어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피해구제와 소비자 분쟁 조정기능 강화

○ 농어촌 문화와 복지 향상

- 읍·면단위 회관, 체육관, 도서실, 노인회관, 보육원, 보건지소, 목욕탕, 사회교육,문화시설 등의 이용도 제고와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복지관 건립 등 농어촌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이용도 제고
- 농어민단체, 지역주민단체 등 민간단체 중심의 전통문화 개발과 공동체 문화개발·보급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문화운동의 지원 및 육성
- 여성 농어민의 농어업 노동증대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탁아시설 확충, 모자보건 강화 등 여성 농어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대책 강구
- 농어촌에 집중된 노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확대

2.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대책의 추진 상황

※ 위와 같은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정책사업과제를 설정·추진하고 있음.

2.1.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대책 추진 상황

○ 도농 통합적 생활권 개발

- (19-308)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계획 종류에 도농 복합형 시·군계획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동계획을 수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

○ 농어촌지역 산업 진흥

- (2-8) 농어촌에 2·3차 산업 유치를 위한 농어촌 산업지구지정계획 추진(농지법중 농어촌 산업지구내 농지전용 특례규정 마

련) 및 전용규제 완화에 관한 농지법을 1994년 12월 22일 제정, 시행령을 마련중임.

- (2-9) 2004년까지 농어촌 400개 지역에 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개정(1994년 9월 9일) 시행
- (2-10) 2004년까지 농특회계에서 1,200억원을 투자하여 매년 2만명씩 총 20만명의 직업훈련계획 완료(1995년 14,000명)
- (2-11)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입주업체에 대한 병역특례지정자 선발 가점 상향 조정(가점 5점 → 10점으로 조정함)

○ 농어촌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충과 투자의 효율화

- (24-161) 농어촌지역 및 과소지역 개발부담금 지원을 위해 도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토록 예산 편성(1995년 2,643억원 편성 : 도 특별회계 세입분의 60%임)
- (24-258) 농어민이 이용하기 쉬운 농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보급(낙농 등 5개 분야 8개 개발: 영농조합, 농업회사 대상)
- (18-102) 국민의 소비생활과 자녀교육에 필요한 공공 교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공영버스 2,778대를 연차적으로 구입, 군단위 지역 버스 운행을 확대 강화할 계획임(1994년 278대분 50억원 지원)
- (19-103) 농어촌의 중요한 하부구조 투자를 위해 농어촌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계획을 2004년까지 26,766㎞(6조 4,490억원)로 확정하고 1995년에는 1,261km 사업을 추진중임.
- (18-101) 농어민이 농어업용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용을 위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조건불리지역의 진흥

- (19-106) 특색 있는 도서, 낙도, 산간오지 개발을 위하여 어촌종합개발계획이 2004년까지 160개 권역을 목표로 1994년 10개, 1995년 21개 권역에 대해 추진(525억원)중임.

○ 농어촌의 환경 보전

- (19-104)농어촌의 생활용수 해결을 위해 2004년까지 면단위 지역 5,000개소의 암반관정 개발과 농어촌 광역상수도 적지조사계획에 착수함.
- (19-105) 농어촌 마을 정비 및 주택의 현대화를 위해 2004년까지 정주권 개발사업(농림수산부) 5만호와 불량주택개량사업(내무부) 25만호, 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진흥청) 20만호 등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함.
- (19-107) 깨끗한 농어촌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정비 2,500마을, 오염 소하천 정비 1,000km,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790개소를 2004년까지 추진계획함.
- (18-100) 농어촌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농어촌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995년 2월 11일)

2.2. 농어민 복지증진대책 추진 상황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 (20-109) 1997년부터 모든 농어촌지역 국민학교에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대상 학교별 급식후원회 설치근거 마련(총 3,747개교중 1994년 768개교 실시, 1995년 570개교 계획)
- (20-110) 농어촌 초, 중, 고등학교 노후교실 개축과 난방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요구중(1994, 1995년 미반영)
- (20-111) 읍단위 이하 초, 중, 고교에 컴퓨터 보급을 위해 1,376개교에 20,000대 보급계획을 완료함.
- (20-112)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군, 읍지역 60개소, 면지역 40개소 등 지역 선정과 도서 구입계획 수립(1995년 현재 8개 도 9개 관 선정)
- (20-113) 농어촌 학교 근무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1994년 9월 22일)

- (20-114) 농어촌지역 교육자 해외 연수기회확대계획을 통해 1994년에 712명을 연수시켰음(연수자 부담액 50% 감액 조치)
- (20-115) 읍, 면소재 공립 유치원 및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범위를 15%에서 30%로 확대하여 자녀교육비 부담을 경감 조치함.
- (20-116) 현행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과 병행하여 융자지원을 확대(1995년 학기별 100억원: 1만명에게 각각 10만원씩 계획, 예산 배정 지연)
- (20-117) 지방도시지역에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시설 건립계획(각 도단위 1개소씩) 확정
- (20-118) 소규모 하교 통폐합을 시, 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통학버스 지원계획을 확정
- (20-119)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집중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20-120) 소규모화된 농어촌 국민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병설운영을 통해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병설학교 운영지침 수립
- (20-121) 자영 농수산고교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추진(1995년 12개교 선정, 184억원 지원)
- (20-122)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를 공립 전문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해 설립 추진회의 개최 및 설립계획 수립(1994년, 3개교, 1995년, 4개교)
- (20-123) 지역별 농업환경의 특성에 따른 농과대학 특성화 육성을 위해 농수산 교육개혁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특성화계획 수립
- (20-124) 농어촌 학생의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 방안을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안에 포함토록 추진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통합의료보험 실시

- (21-12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지역 기초보건의료기관 진료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1,415억원)과 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지원(3,370억원) 및 도농 통합형 농어촌지역에 중심병원 육성 지원
- (21-126) 취약한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재정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의 차등지원율을 3.3%(1994년)에서 10%(1995년) 그리고 20%(1997년)로 조정토록 계획(소득과표와 노인인구 비율 기준)
- (21-127) 조합별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률을 갹출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입원 급여비 전액과 외래 1만원 이상 노인 급여비를 공동분담하는 사업 도입(1995년: 3,145억원, 1996년: 3,510억원, 1997년: 3,940억원)
- (21-128) 월간 건당 급여비 9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 모든 보험자가 공동부담하는 사업(1991년부터 계속사업임)
- (21-129) 농어촌지역 40세 이상 피보험자에게 1995년부터 격년제로 농어민의 건강진단을 재정공동사업으로 실시
- (21-130) 현행 지역조합별 단독 전산체계를 보험자간 및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종합전산망으로 만듬(266개 지역조합과 154개 직장조합과의 On-Line 연계)
- (21-131) 시군 의료보험조합 통합을 위하여 1차로 33개 시와 32개 군을 33개 시조합으로 통합(통합시군지역), 2차로 1개시와 1개 군조합 통합 추진
- (25-162)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요양급여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1995년에는 210일로 하고 매년 30일씩 추가 연장하여 2000년에는 완전 폐지할 계획임.
- (25-163)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총액개념의 진료비로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1996년까지 준비, 1997년 시범사업 실시)

○ 국민연금의 확대와 농어업 경영이양장려금제도 실시
- (21-132)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농어민 및 군지역 주민에게 당연 적용토록 추진(1995년 7월 1일 실시 예정)

○ 농림수산업 산재 및 농림수산물 재해대책
- (18-97) 농어업 재해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개정 및 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 개정
- (23-157) 어선 및 선원 공제료의 국고보조 확대를 위한 신규예산 확보(1994년 1,435백만원 → 1995년 1,645백만원으로 15% 증액)
- (25-164) 불량 종자 및 농자재 등에 의한 농민피해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농수산분야 기능 강화(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교체와 사전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피해보상규정 개정)

○ 농어촌 문화, 복지 향상
- (18-98) 난시청 지역과 영세농어가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농어촌의 약 10만 가구)를 위한 방송공사법 시행령 개정(1994년 10월 1일) 및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는 징수제도 개선
- (18-99) 농어촌 주민의 전화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장거리 전화요금체계 개선(시외전화요금의 대폭 인하: 3분 기본요금 675원 → 313원으로)

3.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대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과제

3.1.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 농어촌에 2·3차 산업 유치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은 지

역 개발과 발전을 유도함이며 또한 농어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일반기업들의 지역 유치에 필요한 농지 전용과 농어민 직업훈련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등의 조치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농어민의 기업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농수산물 가공사업 참여 방안이나 가공기술 연구개발 및 농수산물 저장과 유통사업 참여 지원대책은 미흡
- 따라서 앞으로는 농어민이 농수산물 가공, 저장, 유통 및 농수산 관련 산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과 경영기술을 지도·교육시키며, 품목별 조직을 지도·육성시켜야 함.
-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목적에서 지역산업 진흥대책을 세운다면 농공단지 조성후 무차별적 기업 유치보다는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농림수산물이나 광물 등을 산업 원료로 하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연산업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함.
- 지연산업의 육성은 농어촌 부존자원을 지역주민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조건불리지역인 벽지·오지의 생수 개발이나 관광농어업 개발대책 등이 구체화되어야 함.

○ 농어촌 주택의 현대화를 위한 정주권 개발사업과 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 주택사업 추진기관의 다기화로 인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3개 부처가 관장하고 있음.

- 농어촌 주택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1개 부처 관장체계로 통합시키고,
- 젊은 영농후계자들이나 독농가를 위한 분양형 단독주택 건설, 노인이나 영세농을 위한 비용 절감형 연립임대주택 건설, 그리고 외형을 보존할 가치가 있거나 내부수리만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주택사업은 부락 전체를 집단개발하는 방식보다 부락

정비계획이 선행된 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개별농가 건설방식으로 자유스럽게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폐기물처리대책에 있어서 폐농기계나 농기구의 처리대책이 미흡하며, 쓰레기 수거대책이 미비됨.

- 농어촌 생활쓰레기 수거체계가 수립되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이를 수거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며, 쓰레기의 재활용(퇴비화, 재생 원료 등)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농어촌에 특히 폐농기계나 농기구의 수거제도가 없어 환경 오염이 심해지므로 이를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3.2. 농어민 복지 증진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수립이나 지원계획에서 집행을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나 비용 낭비적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 시정을 위한 중간점검 및 재정비단계를 갖지 못하고 있음.

○ 농어촌 학교 활성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학교 학생의 대학 특례입학제도 수립 방향에서 농어촌 학교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졸업후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특혜를 주는 경우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인 농어촌지역에 들어가 후배를 기르고 지역사회를 일구어 보겠다는 농어촌 학교 학생에게 특혜를 주어 장기적으로 학교 활성화와 교사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지원계획이 군 보건소 중심으로 수행됨으로서 농어민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면단위 이하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원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지역에 따라서는 군 보건소 이용률이 높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

의 농어촌은 면 소재지의 보건지소를 이용하며, 그 곳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경우는 교통이 편리한 도청 소재지나 인근 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됨.

- 따라서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은 면단위 보건지소와 오지·벽지 보건진료소에 비중을 두는 보건의료시설, 장비 확충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농어촌 민간의료기관 지원은 계속적인 농어촌 인구의 감소와 병원 이용률 감소로 인한 민간의료기관 운영 곤란성을 감안해야 함. 특히,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규모만 거대하게 시설한 민간병원의 경우는 계속적인 적자로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규모와 내실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제도 개선대책

- 지역의료보험의 소규모 군 조합 재정관리방식에 따른 재정 적자요인 증대와 보험조직간 적자요인 전가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못됨.
  - · 지역의료보험조합에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재정조정기금으로 모아 취약조합에 지원하는 국고차등지원제도와,
  - · 모든 의료보험자에게 재정의 일부를 갹출케 하여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와 건당 급여비 9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를 공동으로 부담케 하는 재정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 적자요인이 큰 지역조합들끼리 정부 지원금을 일부 갹출하는 것은 모든 지역조합에게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그 중에서도 취약조합만 추가 지원하게 되므로써 성실조합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음.
- 재정공동사업중 노인 의료비 지원은 농어촌보다 노인의 절대수가 많고 의료기관 접근도가 높은 도시지역과 공무원·교직원 의

료보험공단에게 재정 지원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며, 고액 진료비 공동부담사업도 도시나 직장조합에서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며, 고액 진료비 공동부담사업도 도시나 직장조합에서 더 많은 고액 진료자가 발생하고 있어 농어촌을 지원하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재정 관리방식은 사회구조적 적자요인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을 통합재정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분리 관리함으로서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의료보험 관리·운영조직 통합 주장을 수용하지 못하므로서 계속적인 농어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

-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 실시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다만 홍보 부족으로 제도상의 약속이나 규정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농어업경영이양장려금제도

-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제도 도입이 보유되고 다만 60세 이상 65세의 농어민에게는 특별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여기에서 60세 이상 65세의 노령 농민들이 특례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노령의 상태에서 연금보험료를 내기 위한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됨.
- 따라서 60세 이상 65세의 노령 농민 가입자에게는 5년간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소급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경영농지를 이양하는 조건을 담보로 하여 농업구조 개선자금으로 일시불 보험료를 대출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농어민의 산업재해대책

- 농어민의 농작업사고 발생에 사후대책으로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농협의 농작업 상해공제제도가 보급, 활성화되어야 하나 계속적인 사업 적자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재해 발생률이 높음에 있고, 그것은 농기계, 농약 등 농기구의 안전도 미흡과 농약, 농기계 이용의 안전수칙 소홀에 있으므로 이러한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농림어업 산재안전법」의 제정이 필요함.

○ 농어업 재해보험제도

- 앞으로 농업구조 개선정책 추진을 통해 전업농화가 이루어질수록 규모화된 전업농의 농작물재해에 대한 보험제도 실시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험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업농가 농작물의 농작물보험제도 실시방안에 대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3. 농어촌발전대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과제

○ 농어촌발전대책 과제 설정 건수

- 1994년도 완료사업 24건중 농어촌 생활환경 및 복지 증진과제 12건
- 1995년 3월 말까지 완료사업 14건중 생활환경 및 복지 증진과제 2건
- 제도 개선사업 50건중 생활환경 및 복지 증진과제 7건
- 예산관련사업 76건중 생활환경 및 복지 증진과제 23건

총 164건의 사업중 생활환경 및 복지 증진과제는 44건: 1995년 3월 말까지 완료과제 14건임.

○ 과제의 설정은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그러나 과제 설정과정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정책들이 채택되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있었음.
- 특히, 타부처 관련 사업과제 선정에서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중 부처의 이해와 연계된 사업을 확대 설정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재정 지원능력을 초과하는 형태로 발전됨(2-110 농어촌 학교 노후교실 개축, 난방시설 등 환경개선 지원: 1994년, 1995년 예산 미반영).

○ 사업과제 추진 성과

- 범정부적인 농어촌발전대책의 사업 추진으로 농수산업 전반에 활력을 일으키는 효과가 컸음.
- 연계된 관련 부처의 협조로 추진력과 추진진도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빠른 편임.
- 그러나 남아 있는 과제들 중에는 농이민에게는 긴요하고 긴급하나 예산상의 어려움, 제도 개정상의 어려움, 부처간 관계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 이들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청됨.
- 사업과제 수행과정에서도 앞에서 제기된 미흡한 대책에 대한 배려와 추가적인 사업과제 선정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토 론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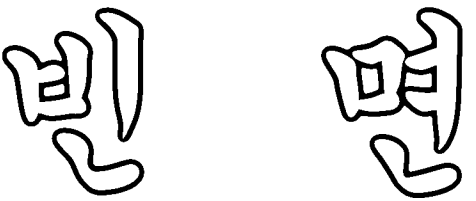

토 론 내 용

제1부: 발표와 토론

사회: 정영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지금부터 제1부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오늘 모임이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며, 2부는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 주제에 관한 토론이 되겠으며, 3부는 종합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농어촌발전대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건국대학교의 문팔룡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남 합천군의 박완수 군수님께서 「농어촌현장에서 본 농어촌 발전대책」이란 주제의 발표와 두 분의 지정토론이 있겠습니다.

첫번째 발표의 토론자는 농림수산부의 농정기획심의관 안종운 국장님이시며, 두번째 토론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종혁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두번째 발표의 토론자는 멀리 전남대학교에서 오신 박준근 교수님께서 토론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토론자는 서산고려원 농장을 경영하고 계신 이홍복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문팔룡 교수님께 주제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주제 발표: 농어촌발전대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발표자: 문팔룡(건국대학교 대우교수)
* 발표논문 참조

사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이 시행된지 그렇게 오래 되지않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좋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지정토론자 중에서 먼저 연구자 입장에서 서종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서종혁입니다. 문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농발대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내용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농어촌발전대책이 갖는 네 가지 측면에서의 특징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고, 발전방향으로서 10가지의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약 때문에 10가지 과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안되신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의견을 몇 가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농발대책에서 비농민 비농업부문의 참여, 특히 자본참여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진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발대책의 전체적인 성격이 정부주도하에 농업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이나 농어민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42조에다가 17조라는 규모의 투융자만 가지고 우리 농어업에 경쟁력이 생기고 또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쾌적한 지역으로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보다 냉철하게 따져 본다면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자본이 농업부문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본의 투자는 민간부문을 통해서 비농업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 농업내부에 있어서도 농

어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발대책에서는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농발대책이 정부 중심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부의 보조에 의해서 경쟁력이 키워지고 농어촌의 생활공간이 바뀌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보조중심 사업들은 경쟁의 원리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기본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특히 보조가 많이 들어간 사업들은 농민들의 경영마인드가 상당히 저하되고 상실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쟁력 제고사업과 같은 것은 보조의 규모를 줄이고 보다 저리의 융자중심 체제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농업부문의 자본 참여 특히 농어촌의 2차, 3차 산업이라든지, 농어민들의 생활개선과 관련된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농업부분의 자본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간이 경과되면서 농어촌발전대책을 만들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보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업부문에서도 기술혁신이 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어촌발전대책에서 소위 투융자계획들이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수도작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계화를 한다든지, 전업농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쌀농업의 기술체계를 보면 과거에는 이앙 체계에서 직파체계로 더 나아가서는 무경운 체계로까지 간다고 하는데 투융자계획에서는 대규모 기계화 이앙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대로 프로그램에 담겨 있다면은 이런 부분은 기술발전에 따라서 적절히 바꾸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하나는 지방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앞으로 그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농어촌발전대책의 집행과 관련된 통합실시요령에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설정에 맞는 농촌, 농업개발 정책의 계획과 실행을 위한 자율적인 폭이 과연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과연 세계화, 국제화라

는 여건변화에 산업개발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투융자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안종운 농림수산부 농정기획심의관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종운(농림수산부 농정기획심의관)

방대한 농어촌발전 대책과 앞으로의 발전과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신 문팔룡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발전되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저와 정부입장에서도 대부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간자본유치 문제는 우리 농업부문의 대부분을 언제까지 재정에다 의존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농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는 농민들, 전체 국민들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농촌, 농민단체, 농민이 취해야 할 부가가치와 이득을 비농업부문이 빼앗아 간다는 사고에서 빨리 점진적,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민간부문의 자본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농촌의 자본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민간자본의 유치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대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발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농촌의 자본력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고 생각을 할 그 시점에 가서는 과감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지매입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는 농지를 중심으로 창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평소에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실적면에서 평균적으로 1,300~1,400평 정도를 구입을 해준 점에서 너무 적지않느냐는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농지 소유면적이 약 3,000평이라고 봤을 때에 1,300~1,400평의 규모를 키워줬다면 그래도 크게 늘려주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문농가나 능력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서 5~10ha 규모의 농가를 창업을 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음에 지적해주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사업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림수산부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보다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인을 해야 되겠다는 점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사업별로 차등보조를 할 때에 중앙부처간 차등보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교부금이나 지방 양여금 등을 통한 전체 재정을 가지고 차등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농림수산업 지원방식에 대해서 보조사업은 좀 줄이고 융자사업분야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개별 농가단위로 투입이 되는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로 가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도로, 상하수도, 축산폐수시설같이 사회기간적 간접자본적인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높이고 또 과감히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유리온실이라든가 고가의 현대화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농가가 몇십억 몇억원씩 투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보조를 지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별농가

에 대한 지원은 장기저리자금의 융자로 가는 것이 합당하고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심사평가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또는 사계의 전문가들의 편파적인 평가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또 전업농 육성과 농촌공업화는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연구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현재 겸업화로 가고 있는 농촌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해서 전업농과 비농업이 농촌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좀 더 연구 검토되고 시책이 더 개발되어야 할 부분으로 느낍니다.

다음에 농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농어촌발전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정한 28개 법률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걱정해주신 농지임대차관리법은 농촌 현지여건이 급작스럽게 변환되어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농업기본법이 사문화된 대표적인 법으로 기억되고 있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농어촌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외국제도의 모방에서 온 엉뚱한 법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수님께서 새로운 착상으로서 농어촌발전대책을 평가해주시면서 네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네 가지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과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농발대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고의 발상이라든가 발상의 전환을 밑에서부터 농어민들 스스로에 의해 만들고 정부가 받아들인게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가지의 새로운 착상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우리나라 농촌, 학계, 농업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과연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이 점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융자 규모가 대폭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고 반겨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여 세금을 내는 국민들한테 농업투자에 대한 떳떳함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를 안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재원의 규모확대와 더불어서 정부 이상으로 농민, 지방자치단체, 농어민단체가 합심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올리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민주농정 집행방식 도입에 있어서도 우리가 농어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린다면 선택된 사업의 집행을 책임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노력과 정신력들이 지방 자치단체나 농민들한테 앞으로 부여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며, 셋째로 경영효율의 지양 문제는 농업부문에도 경영기법을 빨리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이 농업을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착상으로 평가받는 것들이 좀더 빨리 정착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사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마칩니다. 이어서 경남 합천군 박완수 군수님께서 「농어촌 현장에서 본 농어촌 발전대책」이란 주제로 발표가 계시겠습니다.

주제발표: 농어촌현장에서 본 농어촌발전대책
발표자: 박완수(경남 합천군수)
* 발표논문 참조

사회: 감사합니다. 박군수님께서 일상업무가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일선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남대학교 박준근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박준근(전남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박준근입니다. 군순님께서 대단히 많은 항목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중 추진상황의 내용만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요약해 놓고 있는데 사실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비슷한 지역인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전라남도의 보고서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결과가 93년과 94년을 비교해서 열거해 놓았더라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하여 소상히 알 수 있었을텐데 하는 것이였습니다. 한편 우리의 농정에 대하여 실제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현재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고경영자과정에 있는 농민들을 상대로 개인적인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모든 부문에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문도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일일이 다 말씀 못드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중 첫째는, 전업농 육성 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농가 1호당 1ha가 못되는 논의 면적을 가지고 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합천군의 경우를 보면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농지구입비용으로 호당 2,800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전업농 육성을 위한 경작규모를 5ha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한 5ha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지가격이 평당 2만원 내외의 가격이라면 이러한 정도의 지원으로는 5ha가 될려면 9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전라남도의 조사자료를 보면 농민들의 90%가 농지를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더 늘릴 의사는 있으되 농지를 팔아야 겠다는 농민은 불과

4~6%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구입비용을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농지가격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농지가격이 올라가면 생산비가 올라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경쟁력제고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쌀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둘은 우리가 5ha를 설령 2억원 내지 2억4천만원을 융자해주어서 9년후에 5ha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 정도의 규모는 제가 미국의 알칸사주를 중심으로 중간규모 쌀농장을 가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 평균 쌀 농가 규모의 800배 이상의 큰 규모로 쌀을 경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전업농 육성정책이 바른 정책인가에 대하여 회의를 느낍니다. 셋은 5ha, 10ha의 전업농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농가가 탈농을 해야 되는데 농촌을 떠나기 싫어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복잡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팔려고도 하지 않은 농지를 사라고 계속 돈을 주기 보다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농지규모가 적은 가운데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군수님께서는 현지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농기계를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항목을 보면 농민의 절반이상이 농기계를 공동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절반정도는 농기계를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을 계속해서 융자해 준다고 하면은 결국 농촌에 농기계가 과다하게 보급되고, 이것은 또 생산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팔룡 교수님께서는 영농조합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에 대하여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설립을 하고 있었으며, 일단 보조가 끝나고 나면 농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충당되지 않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기계들의 수명이 다

된 뒤에는 아마 많은 위탁영농회사들이 도산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앞으로는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보다는 농기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적정면적을 구해서 일정 수 이상의 농기계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융자조건들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오늘날 농민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가장 큰 문제가 가격불안정이고, 그 다음이 높은 생산비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WTO협정때문에 가격불안정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기에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합을 육성해서 자체적으로 출하조절을 한다든가, 계약생산을 한다든가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이것이 군단위에서는 어떻게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후계자를 선출한다거나 전업농가를 육성 지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수의 농민들이 관과 밀착된 농민이 먼저 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령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된 농민이 정말로 농업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94년만 해도 후계자의 59%가 떠났고, 91년부터 94년까지 4년동안 평균 31%가 떠나갔습니다. 물론 군 단위에서도 여러가지 신중을 기할려고 애를 썼겠습니다만 이것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농민들도 정부가 객관성있게 의지력이 강한 농민들을 선출하는 방법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상 끝을 맺겠습니다.

사회: 여러가지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홍복 서산고려원 농장주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복(충남 서산 고려원농장 경영)

저는 시골에서 직접 영농을 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농어촌발전대책은 농민들의 생활의 질을 세계화에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뿌리를 내린 농민들은 소득도 안정이 되고 주택도 대단히 문화적인 시설로 고쳐지고, 자기생활에 필요한 승용차도 구입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착농민들의 생활의 질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의 생산성, 국제경쟁력은 아직은 미흡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여러가지 사업중에 첨단온실사업 즉 시설화훼, 시설채소사업은 대단히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생적 경영체를 만들기 위한 농민들의 결속력 등 철저한 프로의식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농업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 하나의 농민으로서 보다는 기업인의 자질을 키워줄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설화훼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소유제도에 대해서 한마디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소유가 진흥지역 밖에는 3ha로 제한되어 있어서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을 사가지고 개간을 하는 편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을 사서 개간을 하는데도 그 중간에 100평, 200평의 전답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소유가 안되죠. 그래서 저는 진흥지역밖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는 것이라면 진흥지역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감히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1부 발표토론을 끝내기에 앞서서 두분의 발표자께 간단히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팔룡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문팔룡(건국대학교 대우교수)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번 농발대책에서의 재정확보 규모가 42조원에다 별도로 농특세 15조 등 합해서 57조원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능력이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전무후무한 엄청난 규모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농수산분야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농특세의 경우에는 앞으로 35조원이라는 돈을 4년동안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사이래 처음있는 밀어부치기식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년동안에 대대적인 사업,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크게 생각하면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단계는 크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이지 크게 행동을 완료한 단계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사업의 수가 많게 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러한 예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래 되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할 때 예산집행에서의 낭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장관님이 공헌하신 규모있는 사업, 시기에 맞는 사업, 여건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농림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동태적 여건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이 수행되었으면 합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수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경남 합천군수)

박준근교수님 몇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앞으로 농지를 팔 사람이 적어 구입하기가 곤란한데 농지구입자금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농지가격이 올라가지고 생산비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서 대안으로 오히려 소규모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으로 가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영농차원에서 1농가당 경지면적을 늘려 생산비를 다운시키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농지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저희 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65세 은퇴농을 60세로 하향조정하고 농지매도를 경험농가 2ha이상에서 1ha이상 농가로 하향조정하자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계구입자금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기계구입을 많이해서 생산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현실은 지금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고 또 부녀화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촌도 기계화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많이 구입함으로써 농가에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단비를 낮추는 그런 결과도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정부에서 농산물 관측제도를 활용하여 전반적으로 가격지지정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보며, 지역단위에서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부에서 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영농후계자 선발이라든가, 전업농 선발시 관에 밀착된 농어민만 먼저 선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민이 신청하면 군의 농발심의회, 도의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에는 농발심의회 자체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300명이든 1,000명이든 신청자를 전부 농발심의회에 참석을 시켜 개개인의 영농조건이라든지 신청자격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마을이라든지 한 읍면의 경우에 대부분 농가가 상대방 영농의욕, 규모,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고 토론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남은 문제는 3부의 종합토론에서 충분히 다루기로 하고 이상으로서 제1부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부: 발표와 토론

사회: 강정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제2부 사회를 맡은 강정일입니다. 1부에서는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전망 발전방향에 대해서 총론적인 입장에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농발대책의 3대목표가 경쟁력강화대책, 농어촌의 생활환경과 복지대책 그리고 농어촌에 2차, 3차 산업을 유치하는 세 가지가 목표인데 오늘 세미나에서는 경쟁력강화 대책과 농어촌 생활환경 및 복지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두 분이 모두 그 당시 농어촌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참가한 분입니다.

먼저 설광언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자: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논문 참조

사회: 우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발표를 해 주신것 같습니다. 먼저 농진청의 이은종 국장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종(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

농촌진흥청의 연구관리 국장입니다. 발표자께서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셨습니다만 발표자료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내용 추진현안 및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추진실적에 대해서 각종 법률규정 등 제도개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시책을 금년도 계획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성과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하여 토론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금후 경쟁

력 강화대책 성과를 분석하는 데는 농어민이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지원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책 하나하나가 실제로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하는 것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농림수산업 경쟁력의 실태를 보면 가격경쟁력은 높은 임차료와 노력비 과다로 인해서 외국에 비해 절대 열세이고, 품질경쟁력은 우리나라 고유의 토양 기후조건에 따라 품목별로 우열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소득경쟁력은 규모가 영세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농어촌발전대책의 중심과제로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 10대 핵심 시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옳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후 1년이 된 지금 평가하기가 무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경쟁력강화대책의 계획 홍보는 아주 충분히 잘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책에 대한 농민들의 지원, 신청도 과다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선발된 사람은 특정 농민만 지원계획에 혜택을 받게 되고 다수 농민은 오히려 불만이 야기되는 이러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느때보다도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발표자께서도 민간을 참여시켜서 종합산업으로 육성화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이나 농림수산부 전부가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중에서 기술개발과 지원체제 혁신을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지원체제 혁신 내용은 농어업 기술개발체계 정비, 농어민 전문가의 현장공동연구사업, 농어업 분야의 첨단기술 추진, 농촌지도사업의 원스톱서비스 체제로의 개편안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림수산부를 위시해서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농경연, 한식연 등이 역할분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개발 중에 생산기반 기술개발쪽은 농진청이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쟁력강화 시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개발 체계가 농림수산부와 진흥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혼란없이 체계적으로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양평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계시는 김동수 선생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수(경기 양평 개군한우목장 경영)

경기도 양평에서 한우농장을 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우선 사업이 잘 되려면 선발, 시행, 사후관리하는 체제가 지금보다는 좀더 간소화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선정, 대출, 지도하는 체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금을 받아 일을 시작한 뒤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발표자께서 제시해주신 자금관리 문제에서부터 인력의 정예화 문제까지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들이 하나도 발전되어 가지 않고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지원만 해 준것으로 끝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를 주었던 자금들이 사업내용에 맞지않게 사용이 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수를 철저히 하는 자금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열심히 잘해서 사업을 확장할려고 할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금을 과감하게 지원 해주도록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잘 안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교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그 돈이 농민의 소득이 되어서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다른 용도로 갔는지 조

차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할 때 무분별한 사업신청이나 계획성없는 융자신청은 매력이 떨어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자금도 줄일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예농업인, 정예관리인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또 하나 아쉬움이라고 하면 이 사업에 200여가지 꽤 많은 종류의 사업이 있는데 일선 면사무소, 군청에서 일을 보게 될 때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이나 군청 산업과 직원들이 이 많은 업무를 전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보면 축산단이나 농지단이다 하는 사람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인계인수를 받고 보고서 몇장 쓰고 하다보면 실제 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인구비례로 공무원들을 감축하고 더주고 하는데 시골인구가 줄다보니까 저희 면사무소 같은 경우 산업계장하고 직원 서너명이 있는데 보통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업무도 봅니다. 축산을 하다 농지를 보면 오히려 농지전용을 한번 받아보았던 사람만큼도 그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비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사정이 어려워 육계를 해볼까 하고 농지 일시전용을 받으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육계사육은 정식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니까 일시전용은 계사를 짓는데 문제만 없으면 전혀 어려운 절차가 아닌데도 담당직원이 방문을 하여 현장에도 가보고 하였는데 또 여러가지 주문을 하였습니다. 주변 농지를 가진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오라 지게차가 드나들 진입로 확보등등...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직원이 농지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선에서 실제 농민들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자기의 업무를 잘 파악하여 농민들하고 서로 부담없이 만나고 또 쉽게 일처리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것도 현장에서의 아쉬움입니다.

또 하나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산, 유통, 가공까지 참여할 수 있

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한우 판매장을 잠실에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는 세금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18개월만에 한우고기를 15억원 가까이나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억원이나 판매를 했는데도 1,400만원 가량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이유는 그 중 고정재산 투자가 2,000만원 정도 되니까 실제 적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자까지 계산하면 거의 적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축협중앙회 판매장에서는 230억원을 판매했는데 9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 추석때는 물가안정을 위해 세무서에서 까지 한우판매장에 나와서 값을 내리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반협박을 하고 간 일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소득신고를 하는 것 때문에 세무사하고 의논해 보니까 한우 축산물의 경우 경상비를 제하고 이익률을 14%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축협중앙회의 경우나 전국의 한우판매장을 보면 흑자를 내는 경우가 별로없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판매되는 자료는 축협중앙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100% 노출이 되고 상세히 다 통보가 됩니다. 적자를 보았는데도 판매된 금액까지 계산해서 소득세 6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팔 자갈논도 없어 큰 난리가 나서 실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세금문제도 이러한데 유통에서 가공까지 여기에 참여하는 농어민들에게는 정책적으로 농림수산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무지하고 경험이 없어 많은 피해를 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관님들께서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관성있는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를 하는 사람이라 한우쪽 얘기를 하는데 현재 소값이 상승된다고 해서 경쟁력 제고사업, 아니면 통합사업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과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이러한 사업은 일시적인 물가안정이나 소값안정 때문에 자꾸 중간에 중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금지원이 중단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금리부담에서 심적부담까지 크나큰 차질이 옵니다. 시골에서 소 몇마리씩 기르던 사람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자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고 밤낮으로 사업계획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남들처럼 잘살고 차도 사야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중단 소식은 돈으로 비교를 할 수 없는 충격이 있습니다. 농장,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피해는 1년에 천만원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를 비육하는 사람의 경우 50마리 하던 사람이 50마리를 1년동안 못키우면 그 수익에 대한 차액은 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생계도 양에 안차는데 사업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며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사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과제인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어민복지대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정명채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발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대책의 성과와 과제

발표자: 정명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논문 참조

사회: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의 김용태 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문경태(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먼저 이런 자리에 보건복지부에 근무하고 있는 저를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94년도 1월초에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또한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업정책심의위

원회에는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 구조개선분과위원회, 마지막으로 후생복지분과위원회 이런 세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후생복지분과위원회의 간사역할을 제 자신이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분과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다 두고 농어민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후생복지정책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문화체육부, 노동부, 재경원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신 정박사님, 농협이사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10차례 이상의 모임을 갖고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정박사님께서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소개를 해 드린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의료보험이지만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아는 입장에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농어민연금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5월 30일 현재 95.3%까지 농어민들이 가입하겠다는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실제로 농어민연금을 실시했을 때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자진납부하면서 참여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면서 농어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로운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어민연금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농특세 재원에서 향후 10년간 8,000억원의 재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어민에 한해서 기본보험료가 월 6,600원이 되는데 그중 3/1인 월 2,200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의료보험개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개혁은 지난해 상반기중에 저희 부처에서도 하나의 큰 과제로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도립병원 운영 확대와 도농통합형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민간병원을 유치하는데 농특세 재원등을 투입해서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과제들을 우리 부에서는 농어민 후생복지 대책의 과제로서 마련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보험분야에서 지난 1년동안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한 결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제들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 등 세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교공단 의료보험이고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직장의료보험, 농어민이나 도시자영업자들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 군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중에서 10%를 따로 떼어가지고 농어촌 지역조합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년간 약 56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서, 또 소득과표에 따라서 하나의 재보험 성격으로 노인의료비와 고액진료비가 재정이 취약한 지역으로 흘러가도록 저희가 공식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공동부담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공식에 의하면 농어촌 지역조합에서는 재정공동사업에서 부담하는 금액의 6~7배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도시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2배정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의 부담은 직장조합과 공교공단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 1/4분기 실적을 보니까 농어촌지역 조합의 경우에는 부담한 것의 6배 이상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고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부담한 것의 반만 찾아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를 보니까 직장조합이 2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그 돈이 군지역조합이나 인근 시지역조합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공교공단에서도 4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증자료를 가지고 검증해 보니까 정박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로 농어촌 지역조합에 자금이 지원되는 이전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 단독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의 절반을 감면해주도록 금년 상반기에 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5월부터는 농어촌지역 주민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들은 1년내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대책들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의송 부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현의송(농협중앙회 조사부장)

농어촌발전대책 추진 1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러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박사께서 농어촌생활여건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금후 검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담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의료보험문제 도입이라든지, 농어촌주택의 집단개발 보다는 개별농가방식으로 하라는 제안이라든지,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여기서 저는 발표자의 견해에 대해서 약간 첨가하고 싶은 것,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농작업 재해대책에 대해서 누누히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농어민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농작업 사고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의 건강이나 생명의 안전없이 복지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농작업에는 기계화가 계속 진행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더 복잡한 기계는 많이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고령노인에 의해서 농작업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기반정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농협의 농작업 상해공제 계약자가 39만 4천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망이 1,149명입

니다. 상당히 엄청난 숫자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농약중독자라든지 일반재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 농업취업자 260만명이 다 가입했다고 하면 사망자는 이보다 몇 배가 더 많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교통사고 사망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통계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

1993년의 경우에 산업체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재해사망률을 보면 0.032%인데 반하여 농협에서 농작업상해보험에 든 사람을 가지고 사망사고율을 계산하면 0.29%에 이릅니다. 일반 산업재해의 약 10배에 이른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농작업 사망사고율이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한다면 농작업 상해공제제도를 제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작업사고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농작업 안전교육도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노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편리한 농기계 개발과 농기계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농촌주택개량 문제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 대폭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농촌곳곳의 빈집도 물론 있습니다만, 신축주택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도시의 교통문제나 여러가지 공해문제 등으로 농촌의 생활을 선호해가는 사람도 다소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노인들도 가능하면 농촌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촌주택도 본격적으로 개량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2004년까지 5만호의 주택개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94년도에 일부 농촌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개면에 50~60호 정도가 신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농가는 1년간 1개면에 7호 정도, 전체적으로 약 11,000호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주택공급호수가 93년의 경우에 55만호나 되기 때문에 농가주택의 비중은 2%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농가의 주택을 단순히 불량주택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될 때 국민주택기금이 농촌주택 부문에 대폭 확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기업이 농촌문화복지시설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이 투자했을때 손비인정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에 99%에 이르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옛날에는 농촌에 가서 왜 이농을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면은 소득 즉 돈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이나 생활환경 낙후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촌을 떠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소득문제가 아니라 생활, 교육, 환경문제라고 볼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시설을 갖추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면 기업이윤이 농어촌에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인이 자기의 연고지나 관심있는 지역에 기부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세법상의 손비인정이 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촌 벽지 등 조건불리지역 유지를 위해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시아 몬순지역에 수도작 중심의 농촌지역사회는 농경지가 황폐화된 뒤에 다시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한때 쌀이 남아 돌아 전체 논 면적의 약 83만㏊를 휴경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쌀이 부족하니까 다시 논을 복원시키고자 했지만 불가능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간오지나 낙도 등 조건불리지역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이나 생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UR협상 합의문에도 인정하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소득보상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문에도 환경보전기능을 유지하고 국토관리를 위해서 환경보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스위스같은 나라의 경우 너무 과분하지만 1천m이상 고원에서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에 7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의 경우도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과소

지역진흥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 특별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농촌현장에서 본 구조개선 사업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의 한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약 12명의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융자금을 8억4천만원을 받고, 자부담 3억 2천만원, 보조금 4,500만원을 받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대지 7,300평에 축사 3,000평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농민한테 앞으로 여기에 소를 얼마를 입축시킬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1,500두를 입축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1,500두를 한꺼번에 입축시킬 돈이 있습니까? 물으니, 전혀 마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에 300두씩, 5개년 계획으로 입식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3,000평의 축사를 한꺼번에 짓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짓지 않으면 융자도 안되고 보조금도 못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어놓고 300마리씩 5년동안 입축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해답은 순차적으로 축사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렇게 지원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소로서는 너무 호화판이었습니다. 외견상 화려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생산자단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경영지도를 해야 되겠으며, 지원시에 그분들의 경영능력 같은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이상으로 세번째와 네번째의 발표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3부: 종합토론

사회: 정영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후 한나절에 너무나 방대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시간도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도 피로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처럼 모인 기회니까 끝까지 진지하게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

다. 마지막 종합토론에는 여섯분의 토론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론자 중에 해수어류양식수협의 임덕섭 조합장께서는 여기까지 오셔서 제2부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만 부득이 오늘 지방에 가셔야 될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셨습니다. 토론취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때 담아서 내용을 싣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지정토론자는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다섯분의 지정토론이 끝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몇분에게 간단히 코멘트 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7시 10분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섯분의 토론자를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남 나주 봉황농협 정홍기 조합장님,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엄홍우 회장님, 농림수산부 김동태 농업정책실장님, 성균관대학교 오호성 교수님, 경남 밀양군 산내영농조합법인 대표 김가현 선생님입니다. 지정 토론자께서는 한분이 대체로 8분 전후로 발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쪽에 계신분의 말씀부터 들어보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가현(경남 밀양 산내영농조합법인 대표)

밀양 산내면에 사는 김가현입니다. 저는 시설채소 단지를 약 38,000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대 시설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같고,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습니다만 제가 겪고 느낀 것,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것을 정리해서 읽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유리온실, 첨단시설 하우스를 38,000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채소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와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50개소, 내년에는 150개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로 그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는 농산물 과잉생산을 염려 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수

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경남지역에는 실제 하우스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밀양지역은 풋고추, 들깨, 딸기 하우스가 전국적으로 제1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경남무역을 설립하고 농수산물수출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선 채소분야의 농산물을 수출하여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농산물을 가져가서 유통되어 나가는 과정을 지켜도 보고 농가도 방문해 본 결과, 일본은 농민들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노령화 되어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시설채소하는 사람들은 대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은 노령화에 따라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수출이 보통 3월경에 끝나는데 지금은 현재도 하고 있고 8월까지도 계속하려 합니다. 연중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국내적으로 현재 채소 특히 과채류분야에서는 최소한 비가림재배를 하지 않고는 산성비나 기타 공해때문에 생산이 현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첨단시설에서는 생산이 자꾸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보통 농민들과 반대로 영농을 합니다. 즉, 11월부터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지생산이 자꾸 줄어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해주는 첨단시설 하우스는 연중생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시도때도 없이 물량이 들어오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한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문제점은 시설채소 생산과 일반 농작업이 병행되어 나가다는 점에 있습니다. 농가 유휴인력 흡수를 위해 농공단지를 농촌에 만들자고 하지만 사실상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저희 군은 5월초부터 인력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시말해서 여자인부 1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50만원의 기부금을 주고 데려옵니다. 가만히 있는 인력을 가져오는게 아니고 남의

농장인력을 스카웃해오는 것입니다. 인력확보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시설채소와 일반농작업이 병행되는 시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농작업 노동인력 부족현상이 상당히 극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에 공장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다행히 인력이 많다하는 공장에 저희 면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확보못하고 인근 지역에서 통근버스에 실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 안면때문에 그 공장에 못갑니다. 같은 값이면 지금까지 함께 일한 곳에서 일해주도록 하자는 것이고 또 시설하우스가 연중 일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일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촌에 돈이 투자되면 농업시설들이 여러가지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센타, 냉동창고, 여러가지 순수 농작업에 관한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서게 됩니다. 그 시설만 들어서도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누가 충당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농촌문제로서 제가 1990년부터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국 최대의 농장을 만들어 놓았다 해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최대의 농장이 과연 성공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무조건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합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 가장 중요한 인력 확보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길림성과 합작하는 방안도 만들어 여러 채널로 노력을 해봤지만 농업분야는 아직까지 해외인력을 취업시킬 수 있는 허가가 안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가 농촌을 살린다는 취지아래 거대한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경영자인 저로서는 책임을 못질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농림수산부 소관인 어업, 어민 계통에서는 중국사람 등 해외인력의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분야에서도 해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남도에서만이 수출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배농가는 생산량을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소규모 가족농들은 국내시장에다 판다면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그러나 농민들이 어떻게 수출합니까? 제가 볼 때 도단위에서는 수출 지원 업무가 너무 힘겹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수출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농진공에서 지금 농지매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영농조합을 시작한 것은 92년이고 93년도에는 지원사업으로 10,000평의 첨단 시설하우스를 만들어 하고 있었을 때 농지는 농진공에서 책임질테니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만큼 만들라고 해놓고서는 94년에 들어와 정책이 바뀌었다 하면서 하나도 지원을 안해줍니다. 애시당초 소장님하고 6만평의 최첨단 시설하우스를 전국 아니라 동양에서 최대로 만들자고 약속했는데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소장이 왔는데 시책이 바뀌어서 채소분야는 지원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량 수출도 해나가고 있고 외화도 벌어들이는데 농지도 약속대로 사주고 하면 더욱 더 잘할 것인데 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와 약속을 한 농어촌진흥공사 사장님께서는 국가와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300평만 사주고 나머지는 나몰라라 해서 60,000평을 임대차계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억씩 임대차료가 나갑니다. 농정사업에 임대차 계약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원이 안됩니다. 좌우지간 정부 정책이 이렇게 180도로 돌아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발전대책이 수립된 이후 농촌에는 사실상 괄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합니다. 좀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사이래 이런 지원정책이 농촌에 과연 있겠느냐! 기회를 한번 잡자 하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뭘한다고들 하지만 아직은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제일 순진한 것이 농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거대한 돈이 내려 오더라도 농림수산부에서 주는 돈은 전부 다 시설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 농촌에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우스를 떼어가지고 어디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는 행정기관에

서 놔두지도 않습니다. 요즘 농민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고맙습니다. 김가현 선생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셔서 오늘 이 모임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바쁘신 중에도 청와대에서 최양부 농수산 수석비서관께서도 와계시고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제도의 일관성 문제는 현저하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전남 나주 정홍기 조합장님 부탁드립니다.

정홍기(전남 나주 봉황농협 조합장)

방금 소개를 받은 세계의 배 생산단지라고 하는 전남 나주 봉황농협 조합장 정홍기입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농업정책사업을 중앙단위에서 결정하여 지방에 하향적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전시행정적인 것이 많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농업 정책수립에 농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농민들 또한 자기 농업경영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WTO체제의 출범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농업여건이 엄청나게 변화한 상황에서 농민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농림수산업 통합실시는 매우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려면 농민의 자구적 노력이 확대됨으로써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지고, 농업경영에서도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가 확산되어야 치열한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57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농촌에 투자함으로써 농촌지역은 모처럼 활기를 띄고 활발히 움직이는 생동감이 넘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두가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외치며 적극적으로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촌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온 정부의 굳은 의지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영농법인 및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여신조건에 대해서 입니다. 법인 신용조사에 있어써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신용조사를 법인의 임원 위주로 하게 됨으로서 장래 법인의 사업 성패를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아울러 대출이후 사후관리 한계점에 대해서도 대출이후 법인 구성원중 그 어느 한사람의 임원이라도 탈퇴할 경우에는 법인구성원간 내분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회피 때문에 대출기관과 법인간에 상호 충돌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 단지화가 유도되도록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 지역 안배에 너무 치중한 나무지 지원 대상자들이 상호 연관관계를 갖지 못하고 독립된 사업을 함으로써 상호기술 교환이나 생산 농산물의 판매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지역을 특산단지로 조성하여 한곳으로 집중 투자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단지, 양돈·비육우·양계 등을 하는 축산단지, 농산물 가공사업단지 등으로 공업단지와 같이 농업도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집중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농촌 농업의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종합농협과 전문농협이 상호경쟁토록 함으로써 농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상호 경쟁함으로써 모두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에 발맞춰 농협조합장들은 농촌 농민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농협을 믿고 금후 우리 농협과 함께 항시 농정시책을 적극 전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특례 입학제도는 아주 획기적인 정부시책으로 우리 농촌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례

입학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주시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술 가공공장에 대해서 피부로 느꼈던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산업에서 농가수취가격 증대를 위해 2차산업과 연계되도록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농민을 대표하는 저희 농협에서 UR대책사업으로 나주 관내 12개 농협이 배술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을 설립하는데 자금이 토지구입과 건축, 기계, 원료구입 등 운전자금을 합해 약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시군단위 사업은 30억 이하로 규제되어 있으며, 자금지원은 30억중 보조가 40%인 12억원과 융자 30%인 9억원의 혜택밖에 못받게 됩니다. 그런데 융자금은 결국 상환해야 될 금액이므로 40억원중 28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농협이 분담하게 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막중한 세금까지 부과된다면 운영상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새법을 보면 농촌 농민에게 필요하여 농민이 제조한 농림자재, 비료, 농약과 전통주나 민속주는 면세됩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배술 가공공장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술 원료가 역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임을 감안하시고 또한 보관 유통의 애로점도 있는 만큼 제반 규정들을 정부차원에서 완화시켜 면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하여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공공장을 설립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공장부지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공장부지의 허가면적이 도지사가 허가해줄 수 있는 면적이 약 1,000평 정도 시장·군수가 허가해줄 수 있는 면적이 300평 정도인데 이 정도의 면적으로는 공장유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저온저장창고도 필요한데 절대농지에는 저온저장창고를 못짓게 규제되어 있는 등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므로 농민단체가 모든 가공공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관계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망하면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섭(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짧은 시간에 산적한 수산 현안을 열거하기란 어렵겠고, 그래서 수산당국이 지난 1년간 추진했다고 한 주요 농어촌발전대책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다 정화와 기르는 어업육성 기반 확립입니다. 정부는 지난 93년부터 어장 정화선과 어항 청소선을 건조운영하고 94년부터 연 1회 범정부적인 "풍요로운 바다가꾸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다가꾸기대회는 어민과 국민들에게 바다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후손들로 부터 빌려왔다는 자연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민에게 있어 바다는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풍부한 자원을 전제로 한 바다일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원없는 바다는 어민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60년대부터 "기르는 어법"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오늘날 자원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내고 이를 해결코자 하는 범정부적인 계획과 투자와 강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양식장 개발 및 정비와 정리를 통한 생산성 복원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바다를 보전하는 일입니다. 오염된 바다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노력도 필요없습니다. 때문에 바다 정화야말로 우선 어민이 앞장서야 하겠지만 범국민적인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바다가 병들어 죽으면 어민만 못사는게 아니라 국가적인 중요한 식량산업 기반이 죽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과 어업질서 문제입니다. 수산청은 94년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원 수준을 감안하여 어선 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94년 9백72톤을 감척하는 것을 비롯, 2004년까지 13만톤을 줄인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수산정책은 지난 70년대 초부터 증산 위주였습니다. 자원은 무진장한줄만 알고 우선 잡고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오늘날 자원량에 비해 어선 세력, 즉 어획 강도가 너무 커졌습니

다. 문제는 어업구조조정을 통해 어선 세력을 줄이는데 있어 그 비용을 정부가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극적인 대책이나 지원, 그리고 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듯한 어선 감축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을 통한 어선감척으로 이제 우리 수산업도 종래의 생계유지형이 아니라 기업형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WTO체제가 출범하고 수산물 수입이 자유화된 마당에 언제까지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면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종합적인 어촌개발과 어항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어촌도 도시 못지않게 문화시설도 갖추고 의료, 교육시설 등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소득을 높이자면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 중심의 어촌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권역별, 지역별 집중개발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이에 맞게 협동조합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농특세를 재원으로 4백 8개항 가운데 올해까지 1백 19개항을 완공한다고 합니다. 어항 시설이야말로 어민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어항시설은 태부족한 실정이라 태풍 등과 같은 재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의 어항시설도 이제는 기능위주에서 문화 공간으로도 이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하루 아침에 인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형성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유통 단계마다 "합리적인 마진"을 취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유통 단계를 축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시설투자와 환경, 식생활 패턴 등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특히 수산물 소비 패턴은 소득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 향상에 다른 국민수요 욕구를 여하히 충족시키느냐도 관건입니다. 나아가

수산물 소비 패턴을 유도해 나가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나 방법도 강구해 볼 일입니다.

이어 21세기에 대비한 수산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제화나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도 우리는 과거의 주먹구구식이고 무계획적이고 요행에 의존하는 듯한 사고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능통한 이른바 신세대 감각을 지닌 실력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하고 전망없고 살기 불편한 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갑니다. 이런 마당에서 말로만 어촌을 지키라 할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어촌에 살도록 비젼을 제시하고 역시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숫자채우기 식이거나 지역 안배식의 현행 어민후계자 육성 문제도 다시 검토해서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진정한 어업인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농어촌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와 어가의 경제 지표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어가 평균 소득은 1천7백11만원으로 농가의 84.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가의 부채는 호당 9백29만3천원으로 농가보다 17.9%가 많습니다. 어가의 자산 역시 1억7백96만8천원으로 농가의 76.1%밖에 안됩니다. 이같은 대략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가장 낙후되고 못산다는 농업과 농민보다 수산업과 어촌의 실정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토론을 끝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세번째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엄홍우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엄홍우(한국농어민후계자연협회장)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어촌발전대책은 UR합의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하여 존립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국

민적 요구와 국정 최고책임자의 결단에 의하여 탄생된 것으로 농업분야로서는 대단한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과거 농정에 비해서 농어민의 기대와 요구를 많이 수렴하고 있고,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고 농정에 대한 농어민의 신뢰도는 아직까지는 낮다는 것을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농정추진방식 자체가 과거 중앙정부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추진방식에서 농어민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이나 지방정부의 농정권한 확대 등 상향식 농정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 농어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은 농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정추진방식에 있어서 현장농어민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자율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사업집행요령이 지역실정에 맞지않은 경우가 많으며, 사업예산의 세분화로 예산집행 경직성이 발생한 것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추진에서 비롯된 관행과 탈선이 중앙과 지역의 일부 농정담당자들에게 남아있는데 이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의식개혁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싶은 것은 생산현장 농어민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지방정부의 농업정책 자금의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지방민에 의해 탄생된 후 지방정부, 의회 등 책임자들이 상당부분 오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개혁의 경우 단일 협동조합의 개정 등과 같은 조합원의 요구가 완전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단협의 자율성 그리고 조합원의 참여확대 등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품목별 전문조합의 설립, 복수조합원 허용 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민 연금제도 실시와 농어촌지역 학생 대학특례입학 허용, 병역 특혜 등은 농어민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과정에서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농어촌노인복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취담보제도 실시와 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완화 등도 농어민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보험에 관련하여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의료보험 부담을 경감하기 보다는 농어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료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통합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촌발전대책의 핵심적인 분야는 농업구조개선 분야이며 그 내용중에서도 구조개선의 실질적인 담당자인 농업 중추인력 육성에 대한 안목은 현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도 농민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소득 10,000$ 이상인 때는 경영인력과 노동인력을 분리하는 농업경영적 차원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봄직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농업쪽에서 기계화가 안된 분야는 인력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비싼 노동력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국의

싼 인력도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핵심은 전업농 15만호 육성 및 농업법인 육성에 있는데 기간농가 육성 및 조직경영체 육성이라는 의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선도농가 그리고 농업법인과 같은 조직경영체가 우리 농업을 책임질 중추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품질개선, 경영개선 등과 개별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업농가, 선도농가 선정이 소수 특수층의 창출이 아니라 농촌내 기간농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행정기관 중심의 선정에서 벗어나 지역내 농어민이 추천하고 농업관련기관 단체와 공동심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선정기준에는 영농의욕과 실적, 영농지도력에다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은 인성을 중요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교육에서도 학교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요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업차원에서도 농어민이 선도농가나 전업농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정신이 중요한 평점요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정된 뒤에는 계속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내적으로는 품목별로 조직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되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2000년대 10% 이하의 농어민이 90%이상의 국민들에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농정차원에서 홍보전략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열거한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대책 1주년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각론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시행과 관계관의 융통성이 개선 발전에 중요한 관건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의 오호성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호성(성균관대학교 교수)

저 자신이 작년에 농어촌발전위원회의 한사람으로 농발대책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들을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농어촌발전대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산자위주로 대책 내지는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 주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WTO 유예기간이 끝나면 농업부문은 시장경제 체제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는 수요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UR 유예기간이 끝나는 10년후에는 국내에 국민경제흐름, 국제경제흐름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폭넓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때 국제적인 측면, 해외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이후 지금부터 10년후에는 20,000$ 시대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국민소득 20,000$ 시대가 될려면 도시부문에 있어서 부녀자들의 취업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조리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등 완전히 다른 세대의 소비패턴이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후에는 외식인구가 많이 늘어나 외식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주부들이 농산물을 살때에도 가격보다는 질 우선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 이때의 신세대 주부들은 국산 농산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냥 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에 넘쳐흐르는 외국농산물과의 사이에서 선택을 즐기는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또 뿐만아니라 이때쯤되면 도시화 수준이 90%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농산물의 구매패턴은 대형 수퍼마켓 중심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고 재래시장을 통한 농

산물 구입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시장자체가 소비자주도의 시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같은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서 농민들에게 소량다품종 생산, 청결과 안전도를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도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잔류농약성분이나 화학성분 등이 주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정립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해외의 값싼 농업지역이면서 환경오염이 안된 곳에서 개발 수입도 예상됩니다. 말하자면 OEM 생산과 비슷한 것인데 이와 같은 농산물이 국내의 농민들과 어떤 관계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식품의 포장이라든지 가공기술이 날로 발전되어 장기 수송 농산물의 안전도 확보에 커다란 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공격적인 농산물 마케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급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업을 생각하고 농업을 보는 신세대들의 태도가 확연히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농업이나 농촌을 생산기능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존기능으로서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한다고 볼 때 대체적으로 지금 농어촌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농민들 개인 위주의 수지맞추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농촌에 대한 환경보존, 수질보호, 오래된 농지의 보호를 위한 투자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또한 기존정책과 어떻게 재원을 배분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 생각하고 정책적인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토론자로서 농정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동태(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장)

오늘 주제인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네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보완할 점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김가현 선생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UR 타결이후 상당히 자신감을 잃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분위기에서 뭔가 자신감을 갖고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상당한 성과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배경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방이후 지금까지 법제정을 못하던 농지법, 양정에 관한 법, 협동조합에 관한 법 등 28개라는 많은 법을 통과시켜서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등 우선 농민들한테 신뢰를 심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제도의 틀은 마련했는데 재원확보에 있어서 과거처럼 립서비스(lipservice)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라는 10년간 15조원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42조원도 3년 앞당겨 집행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재원면에서도 상당히 믿을 만하게 신뢰를 준 것이라고 보며, 그리고 95년도에 전체 국가 예산이 15%정도 증가한 반면에 농림수산부 예산은 38.2%라는 상당히 높은 재원확보와 그런 가운데에서 제도의 틀을 확실히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 농민들에게 275개 사업에 대하여 통합실시요령으로 사업지침이 투명하게 제시되고 농민들 또한 앞으로 WTO 체제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 사업을 계획할 줄 알고 규모도 키우는데 있어 정말 경영 마인드 없이는 안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우리 농어민들도 잘 지원하고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후계인력, 질높은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교육부와 협조하에 개선안도 마련하고 진흥청, 산림청, 수산청에서 주도할 전문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후계자를 양성하도록 하며 또한 대학교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물론 토론에서 농업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전문대학도 잘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어민들에게 건강진단이라든지 농어민연금이라든지 특례입학

이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한 것들도 농어촌의 분위기를 활기있게 하고 자신감을 불러넣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성과를 자랑만 한다고 욕하실것 같아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75개 사업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많습니다. 비슷한 사업종류가 많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사업들을 계속 점검 평가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농민들에게 인기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은 확대를 하고, 농어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앞으로 사업의 성과도 별로 기대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노력도 계속 하겠습니다. 방대한 재원을 농어촌에 투입하기 때문에 자금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KDI 설광언 박사님도 얘기하셨듯이 모든 국민이 다 우려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하지만 시도 시군에 대한 평가도 철저히 해서 잘하는 시도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더 늘려주고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재원을 마련해드리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대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초에 시작한 농어민들이 성공하도록 자금이 지원되고 경영지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에서 오신 분께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우같은 경우에 경쟁력 강화사업을 하다가 값이 올라가니까 중단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더이상 자금을 지원하면서 한우사육이 과열이 되어 지금 한우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불행이 올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냉각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농어업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익적인 투자는 정부가 보조를 강화토록 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 장기저리융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점점 규모화되고 영농회사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 되어 나가면 가장 절실한 문제중의 하나가 세금문제입니다. 농수축협이나 임협에서 농어민들에 대한 세무지도에 대해서 각별히 연구지도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에서는 협동조합에서 농민 조합원에 대하여 세무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협동조합중앙회에서 달라지는 영농조건, 규모화되는 영농상황에 농민들이 세금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무지도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과 토론하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농발대책을 보다 알차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2시부터 행사를 시작하여 6시30분까지 종합토론을 끝낼 예정이었으나 거의 한시간 가까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준비나 진행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토론을 끝내는 시점에서 간단히 몇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네 분의 발표자들께서 주제에 관해서 훌륭한 내용을 담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하시는 분들로도 충실한 내용의 토론을 준비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UR협상의 타결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장 큰 농어촌 문제해결을 위하여 통치자의 의지로 시작한 농발위 활동과정들이 불과 1년남짓 전이지만 그 시점을 회고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느낍니다. 당시는 총론얘기를 주로 했고 오늘은 총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각론얘기를 하게 된 것을 보면 이제 총론에 대해서는 콘센서스가 거의 도달이 되어 농업이 어디로 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견의 통일이 이루어진게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 하는 당위론보다는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더 잘 갈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짧은 1년간이었지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다시한번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UR협상 과정이라든지 작년 전반기의 농발위 활동과정을 통해

서 한풀이, 소외감, 감정의 극단적인 주장이 난무하던 시절에 비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좀더 높일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이 된것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국민적인 고민이 그만큼 많았던 만큼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불신이 완화됐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진지하고 솔직한 시책을 수립한 것이 종합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것인가 하는 과제가 많이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겠다,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일관성이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경영마인드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2차 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발표를 해주시고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토론회가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신 농림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정보다 시간이 훨씬 지연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지하게 방청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몇 분을 자유토론에 모실려고 했으나 시간이 늦어서 그 점은 만찬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로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일정 및 토론 참석자 명단

빈 면

행사 일정 및 토론 참석자 명단

주제: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 농어촌발전대책 1주년 정책토론회 -
일시: 1995. 6. 12(월) 14:00~18:30
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주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후원: 농림수산부

행사 일정 및 토론 참석자 명단

◈ 개회 및 인사말
14:00~16:00 개회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영일
인사말 농림수산부 장관 최인기

◈ 발표 및 토론(제1부)
14:30~15:50 사 회 정영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제1주제〉 농어촌발전대책의 과제와 발전 방향
발 표: 문팔룡(건국대학교 대우교수)
토 론: 서종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안종운(농림수산부 농정기획심의관)

〈제2주제〉 농어촌 현장에서 본 농어촌발전대책
발 표: 박완수(경남 합천군수)
토 론: 박준근(전남대학교 교수)
이홍복(충남 서산 고려원농장 경영)

◈ 발표 및 토론(제2부)

16:00~17:30 사 회 강정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제3주제〉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성과와 과제

발 표: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김동수(경기 양평 개군한우목장 경영)

이은종(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장)

〈제4주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촌 복지대책의 성과와 과제

발 표: 정명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문경태(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현의송(농협중앙회 조사부장)

◈ 종합토론(제3부)

17:30~18:30 사 회 정영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토 론: 김가현(경남 밀양 산내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동태(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장)

엄홍우(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회장)

오호성(성균관대학교 교수)

임덕섭(해수어류양식수협 조합장)

정홍기(전남 나주 봉황농협 조합장)

연구자료 D108/토론회 결과보고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찍은날 1995. 9. 펴낸날 1995. 9.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4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